

- 2025회계연도 태안군 일반 및 특별회계 등 -

결 산 검 사 의 건 서

태안군 결산검사위원

결 산 검 사 의 건 서

태안군수 귀하

2026년 5월 4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태안군의회로부터 태안군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2026년 4월 15일부터 2026년 5월 4일까지(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25회계연도 태안군의 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태안군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태안군이 작성하여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 그리고 금고의 결산내용을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태안군 결산검사 위원

대표위원 신 경 철

위 원 김 진 권

위 원 김 종 욱

위 원 유 연 환

위 원 장 경 희

위 원 강 태 경

위 원 김 민 수



목 차

□ 분야별 결산검사 현황	-----	1
I. 결산검사 흐름	-----	2
II. 결산검사 총괄 현황	-----	3
1. 세입·세출 결산	-----	3
2. 기금 결산	-----	7
3. 재무제표의 결산	-----	9
4. 성과 보고서	-----	11
5.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	12
□ 개선 및 권고사항	-----	14
□ 정책제안	-----	100
□ 우수 및 수범사례	-----	105

분야별 결산검사 현황

I. 결산검사 흐름

○ 검사기간 : 2026. 4. 15. ~ 2026. 5. 4. (20일간)

1. 결산검사 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고
대표위원	신 경 철	결산검사 총괄	
위 원	김 진 권	재무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센터, 환경관리센터, 해양치유센터, 읍·면	
위 원	김 종 욱	신속허가과, 농정과, 먹거리유통과, 환경산림과, 수산과, 해양산업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위 원	유 연 환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행정지원과, 안전관리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위 원	장 경 희	경제진흥과, 미래에너지과, 주민공동체과,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복지증진과, 가족정책과	
위 원	강 태 경	신속허가과, 농정과, 먹거리유통과, 환경산림과, 수산과, 해양산업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위 원	김 민 수	세입세출 관련 전반사항, 결산검사의견서 총평 작성,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행정지원과, 안전관리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2. 결산검사 일정개요

- 2026. 4. 15.부터 위원들은 본인 담당업무를 중심으로 결산내용을 파악한 후 검사를 실시하고, 수시 검사상황을 종합하여 토의를 한 후, 4. 29. 미진한 부분을 다시 검사하여 2026. 5. 4. 결산검사를 종료하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태안군에 제출

3. 결산검사 진행

-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검사하고 필요시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 및 현지 확인 실시
- 검사인은 수검기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함
-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의로 통일된 의견 도출

II.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세입·세출 결산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세입·세출결산총괄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잉여금 C=(A)-(B)
계		961,205,555,630	965,331,419,907	811,362,891,292	153,968,528,615
일 반 회 계		895,378,510,730	899,327,398,019	758,967,050,882	140,360,347,137
특 별 회 계		65,827,044,900	66,004,021,888	52,395,840,410	13,608,181,478
	공기업특별회계	47,193,541,220	45,847,319,873	37,342,306,830	8,505,013,043
	기 타 특별회계	18,633,503,680	20,156,702,015	15,053,533,580	5,103,168,435

(단위 : 원)

회계별	현년도 채무상황	다음연도 이월액			보 조 금 실제반납금	순 세 계 잉 여 금
		명 시	사 고	계속비		
계	없음	39,321,297,890	9,430,380,200	62,269,774,759	9,342,924,012	33,429,606,754
일반회계	없음	37,232,968,340	8,817,799,990	58,452,900,639	9,082,196,402	26,599,936,766
특별회계	없음	2,088,329,550	612,580,210	3,816,874,120	260,727,610	6,829,669,988
공기업	없음	2,088,329,550	612,580,210	3,816,874,120	211,565,720	1,775,663,443
기 타	없음	-	-	-	49,161,890	5,054,006,545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 지정재원잉여금 174,545,000원 제외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65,331,419,907원으로서, 예산현액 961,205,555,630원보다 4,125,864,277원이 증액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84.05%인 811,362,891,292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53,968,528,615원임.

이 중 명시이월액 39,321,297,890원, 사고이월액 9,430,380,200원, 계속비 이월액 62,269,774,759원과 보조금실제반납금 9,342,924,012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429,606,754원임.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검사결과 순세계잉여금은 33,429,606,754원임을 확인하였음.

가. 세입결산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정리보류액 (결손처분액)	미수납액
합 계	961,205,555,630	979,029,569,932	965,331,419,907	4,325,690,190	9,372,459,835
일 반 회 계	895,378,510,730	912,601,973,399	899,327,398,019	4,325,690,190	8,948,885,190
공 기 업 계 특 별 회 계	47,193,541,220	46,270,694,043	45,847,319,873	-	423,374,170
기 타 특 별 회 계	18,633,503,680	20,156,902,490	20,156,702,015		200,475

○ 실제수납액 965,331,419,907원은 예산현액 대비 100.4%로 4,125,864,277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9,372,459,835원임.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원)

구 분	2023	2024		2025	
		2024	전년대비(%)	2025	전년대비(%)
계	971,645,957,593	934,780,216,131	96.21	965,331,419,907	103.27
자 체 수 입	106,068,826,092	102,888,656,550	97.00	109,000,190,507	105.94
지 방 세	56,790,289,590	54,245,625,730	95.52	60,637,913,710	111.78
세 외 수 입	49,278,536,502	48,643,030,820	98.71	48,362,276,797	99.42
이 전 수 입	570,861,368,610	578,224,206,520	101.29	638,880,539,380	110.49
지방교부세등	261,154,743,420	268,017,697,000	102.63	288,203,600,000	107.53
조정교부금등	32,098,060,000	35,522,125,000	110.67	42,070,806,000	118.44
보 조 금	277,608,565,190	274,684,384,520	98.95	308,606,133,380	112.35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	294,715,762,891	253,667,353,061	86.07	217,450,690,020	85.72

-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의 재원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세입은 965,331,419,907원으로 전년대비 30,551,203,776원(3.2%)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전년대비 가장 증가비율이 높은 것은 조정교부금등이며, 당해연도 세입 중 비중이 가장 낮은 것은 보조금임.
- 총세입 중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11%와 66.1%임.

나. 세출결산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잉여금
합 계	961,205,555,630	811,362,891,292	111,021,452,849	9,342,924,012	33,429,606,754
일 반 회 계	895,378,510,730	758,967,050,882	104,503,668,969	9,082,196,402	26,599,936,766
공 기 업 특 별 회 계	47,193,541,220	37,342,306,830	6,517,783,880	211,565,720	1,775,663,443
기 타 특 별 회 계	18,633,503,680	15,053,533,580	-	49,161,890	5,054,006,545

- 지출액 811,362,891,292원은 예산현액 대비 84.41%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1,021,452,849원, 순세계잉여금은 33,429,606,754원임.

※ 지정재원잉여금 174,545,000원 제외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원)

구 분	2023	2024		2025	
		2024	전년대비(%)	2025	전년대비(%)
계	774,310,325,755	753,992,798,151	97.38	811,362,891,292	107.61
일반회계	709,107,604,725	696,155,556,261	98.17	758,967,050,882	109.02
일반공공행정	74,477,816,611	54,982,863,138	73.82	46,060,810,097	83.77
공공질서및안전	4,740,861,740	5,830,352,385	122.98	8,169,362,670	140.12
교육	3,357,055,180	3,092,638,590	92.12	2,978,250,950	96.30
문화및관광	43,252,122,121	39,872,483,153	92.19	57,920,169,316	145.26
환경	55,586,110,580	48,956,871,039	88.07	55,078,063,774	112.50
사회복지	149,825,770,720	161,845,208,265	108.02	165,427,051,312	102.21
보건	15,561,586,871	16,230,981,664	104.30	20,030,928,831	123.41
농림해양수산	157,479,869,070	163,930,355,616	104.10	186,722,319,116	113.9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3,903,535,530	17,378,312,650	72.70	40,262,148,922	231.68
교통및물류	34,048,378,084	29,589,598,771	86.90	31,001,463,202	104.77
국토및지역개발	67,252,022,455	69,423,252,300	103.23	54,446,424,730	78.43
기타	79,622,475,763	85,022,638,690	106.78	90,870,057,962	106.88
특별회계	65,202,721,030	57,837,241,890	88.70	52,395,840,410	90.59
공기업 특별회계	45,720,690,840	39,383,689,810	86.14	37,342,306,830	94.82
기타 특별회계	19,482,030,190	18,453,552,080	94.72	15,053,533,580	81.58

-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의 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세출은 811,362,891,292원으로 전년대비 57,370,093,141원(7.6%)이 증가하였으며,
-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186,722,319,116원, 사회복지 165,427,051,312원, 기타 90,870,057,962원 등이며,
- 최근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등임.

2. 기금 결산

기금 조성 총괄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증감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계	10,422,618,670	△1,880,595,209	21,318,531,691	23,199,126,900	8,542,023,461
재 난 관 리 기 금	1,848,557,042	86,066,150	722,799,370	626,733,220	1,934,623,192
경 영 안 정 기 금	200,004,930	△199,900,230	199,490	200,099,720	104,700
식 품 진 흥 기 금	365,967,350	△3,961,220	17,668,780	21,630,000	362,006,130
자 활 기 금	833,741,976	25,343,721	34,343,721	9,000,000	859,085,697
주 민 지 원 기 금	3,234,983,441	△801,658,120	1,322,820,030	2,124,478,150	2,433,325,321
옥외광고발전기금	134,330,570	270,119,340	284,353,090	14,233,750	404,449,910
태안군정제회기금	2,222,211,991	△1,332,388,090	1,303,595,870	2,635,983,960	889,823,901
태안군고향사랑기금	437,059,990	373,626,160	374,914,260	1,288,100	810,686,150
영묘전주민지원기금	400,027,390	411,319,300	411,319,300	-	811,346,69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 합 계 정)	742,287,130	△710,953,940	5,425,036,060	6,135,990,000	31,333,19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 정 안 정 화 계 정)	3,446,860	1,791,720	11,421,481,720	11,419,690,000	5,238,580

- 태안군의 2025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10,422,618,670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21,318,531,691원을 더하고, 사용액 23,199,126,900원을 공제한 8,542,023,461원임.

최근 5년간 기금 사용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5년평균 증가율
전 년 도 말 조 성 액	15,354	22,965	60,362	14,272	10,422	-9.27
당 해 연 도 조 성 액	13,223	47,201	54,746	34,112	21,318	12.68
당 해 연 도 사 용 액	5,612	9,804	100,836	37,962	23,199	42.61
당 해 연 도 말 조 성 액	22,965	60,362	14,272	10,423	8,542	-21.82

기금운용 현황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이월액 (사고 등)	수 입	지 출	다음연도 이월액 (사고 등)
계	-	31,741,150,361	31,576,678,361	-
재 난 관 리 기 금	-	2,571,356,412	2,406,884,412	-
경 영 안 정 기 금	-	200,204,420	200,204,420	-
식 품 진 흥 기 금	-	383,636,130	383,636,130	-
자 활 기 금	-	868,085,697	868,085,697	-
주 민 지 원 기 금	-	4,557,803,471	4,557,803,471	-
옥외광고발전기금	-	418,683,660	418,683,660	-
태안군정제회기금	-	3,525,807,861	3,525,807,861	-
태안군고향사랑기금	-	811,974,250	811,974,250	-
영묘전주민지원기금	-	811,346,690	811,346,69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 합 계 정)	-	6,167,323,190	6,167,323,19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	11,424,928,580	11,424,928,580	-

○ 검사결과 2025회계연도에 기금의 지출액은 31,576,678,361원이며,
기금운용 계획대로 집행하였음.

3. 재무제표의 결산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 원)

구 분	재 정 상 태			재 정 운 영			비 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25년	3,366,169	20,972	3,345,197	677,563	733,433	△55,870	
2024년	3,272,748	20,734	3,252,014	676,522	611,144	△65,378	
증 감	95,289	238	95,051	66,438	58,798	7,641	

- 2025년 총자산은 3,366,169백만원, 총부채는 20,972백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공제한 순자산은 3,345,19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87% 증가하였음.
- 총수익은 677,563백만원, 총비용은 733,433백만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공제한 운영차액은 -55,87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4.54%감소되었음.

재정상태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5년		2024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유동자산	175,381	5.21	209,807	6.41
투자자산	10,945	0.33	11,643	0.36
일반유형자산	225,012	6.68	218,222	6.67
주민편의시설	700,194	20.8	639,645	19.54
사회기반시설	2,247,783	66.78	2,186,596	66.81
기타비유동자산	6,853	0.2	6,835	0.21
자산총계	3,366,169	100	3,270,880	100
유동부채	10,015	47.76	10,503	50.66
기타비유동부채	10,957	52.24	10,231	49.34
부채총계	20,972	100	20,734	100

구 분	2025년		2024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고정순자산	3,176,804	94.97	3,047,881	93.78
특정순자산	6,331	0.19	6,657	0.2
일반순자산	162,062	4.84	195,608	6.02
순자산총계	3,345,197	100	3,250,146	100
부채및순자산총계	3,366,169	-	3,270,880	-

- 2025회계연도 말 태안군의 총자산은 3,366,169백만원이고 총부채는 20,972백만원으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345,197백만원임.

재정운영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5년					2024년				
	총 원가	사업 수익	순 원가	내부 거래	계	총 원가	사업 수익	순 원가	내부 거래	계
I.사업순원가	525,542	309,058	216,483	0	216,483	470,404	284,774	185,630	0	185,630
II.관리운영비	0	0	135,572	(35,106)	100,466	0	0	152,005	(58,087)	93,917
III.비배분비용	0	0	51,631	(76)	51,555	0	0	46,961	(138)	46,823
IV.비배분수익	0	0	14,699	(76)	14,623	0	0	14,915	(138)	14,777
V.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0	0	388,988	(35,106)	353,882	0	0	369,681	(58,087)	311,593
VI. 일반수익	0	0	444,858	(35,106)	409,752	0	0	435,059	(58,087)	376,972
VII.재정운영결과 (V - VI)	0	0	(55,870)	0	(55,870)	0	0	(65,378)	0	(65,378)

- 태안군의 2025회계연도 사업순원가는 216,483백만원이고 관리운영비 100,466백만원, 비배분비용 51,555백만원 및 비배분수익 14,623백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353,882백만원임.

- 한편,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409,752백만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55,870백만원으로 전년도의 65,378백만원보다 9,508백만원이 감소되었음.

4. 성과보고서

태안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제3항에 따라 2025회계연도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성과목표 187개 지표 중 148개 지표를 목표달성(79.1%)한 것으로 집계됨.

성과 지표 달성 현황

(단위 : 개)

구	분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수	달성수	미달성수
계		28	132	187	15	133	39
기획예산담당관		1	6	10	1	6	3
전략사업담당관		1	3	4	0	2	2
행정지원과		1	9	10	0	9	1
안전관리과		1	6	6	1	4	1
민원봉사과		1	5	6	0	4	2
재무과		1	7	7	0	6	1
경제진흥과		1	2	2	0	0	2
미래에너지과		1	2	3	1	1	1
주민공동체과		1	6	5	1	2	2
관광진흥과		1	2	7	1	4	2
문화예술과		1	3	3	0	1	2
교육체육과		1	7	16	1	6	9
복지증진과		1	3	3	0	2	1
가족정책과		1	8	9	0	7	2
신속허가과		1	1	5	1	2	2
농정과		1	4	4	1	3	0
먹거리유통과		1	5	12	1	10	1
환경산림과		1	6	7	1	6	0
수산과		1	5	13	0	13	0
해양산업과		1	4	5	2	2	1
건설과		1	4	5	0	5	0
도시교통과		1	6	6	0	6	0
의회사무과		1	1	1	0	0	1
보건의료원		1	13	18	1	15	2
농업기술센터		1	9	11	1	10	0
상하수도센터		1	1	3	0	3	0
환경관리센터		1	3	3	0	3	0
해양치유센터		1	1	3	1	1	1

5.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 채 권

채권 현황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소 멸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 계	15,242,421,870	4,419,181,000	4,766,080,500	14,895,522,370
일 반 회 계	4,655,728,480	484,857,680	671,749,540	4,468,836,620
특 별 회 계	10,586,693,390	3,934,323,320	4,094,330,960	10,426,685,750
기 금	-	-	-	-

○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4,895,522,370원으로 확인되었음.

(2) 채 무

○ 검사결과 태안군의 채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3) 공유재산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증	감	
합 계		2,393,210,731,941	209,416,410,739	234,230,046,327	2,368,397,096,353
행정 재산	소 계	2,035,947,311,491	71,765,896,632	44,479,781,976	2,063,233,426,147
	공 용 재 산	929,507,938,964	33,937,705,340	14,291,458,448	949,154,185,856
	공공용재산	1,070,061,821,817	36,234,424,833	29,300,758,849	1,076,995,487,801
	기업용재산	116,672,500	1,152,500	1,152,500	116,672,500
	보존용재산	36,260,878,210	1,592,613,959	886,412,179	36,967,079,990
일 반 재 산		194,611,128,040	884,301,327	2,413,891,831	193,081,537,536
건설중인재산		162,652,292,410	136,766,212,780	187,336,372,520	112,082,132,670

○ 검사결과 공유재산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368,397,096,353원으로 확인되었음.

(4) 물 품

물품 증감 현황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증	감	
수	량	1,271	34	56	1,238
금	액	14,246,025,930	1,351,112,530	529,778,710	15,067,359,750

○ 검사결과 물품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5,067,359,750원으로 확인되었음.

개 선 및 권 고 사 항

총 평

태안군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검사는 한 해 동안의 태안군 재정이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 법과 제도가 규정한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여 운용되고, 의회가 승인한 바대로 적정하게 집행되며, 성과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지를 살피는 행정절차입니다.

2025회계연도 태안군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면,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기준으로 예산현액 9,612억원, 세입결산액 9,653억원, 세출결산액 8,114억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1,540억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다음 연도로 넘긴 이월금이 전년도보다 299억원 감소한 1,110억원이고, 국도비 보조금반납금은 93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34억원입니다.

이월금이 전년도 1,409억원에서 1,110억원으로 줄어듦과 일반회계 집행을 전년도 80.8%에서 84.8%로 개선된 것은 고무적인 변화입니다. 다만 세입결산액 대비 결산상잉여금 비율이 15.9%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예산 편성의 계획성과 집행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가야 하는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재정운용의 특징은 세입액이 전년도에 비해 약 305억원 증가한 9,653억원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전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이 전년도보다 약 607억원 증가하며 세입 회복을 주도하였고,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도 전년 대비 약 61억원 증가한 1,09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징수율은 93.8%로 전국평균 95.7%, 충남 평균 96.2%를 하회하고 있으며, 2022회계연도 이후 4개 연도 연속으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2.5%로 유형 평균(18.0%)을 밑돌고 있는 반면, 재정자주도는 58.8%로 충남 군부 최상위권에 해당하나 이는 자체재원보다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세목별 징수목표 설정과 체납 관리 강화를 통해 자체재원 확충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통해 집행부서와 의견을 나눈 주요 시정·권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먼저 세입 과소추계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당초예산(7,591억원) 대비 세입결산액 비율이 78.6%에 불과한 것은 전년도 결산액이 아닌 본예산 기준으로 세입을 편성하는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 규모의 과다화와 예산 신뢰성 저하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에 더해 세입금 정리보류(결손처분) 총액이 약 43.3억원으로 전년도 약 10.2억원 대비 4.25배 급증한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입니다. 이 중 무재산 사유만으로 약 39.1억원(전체의 90.3%)에 달하는 이례적 집중 현상이 확인되는바, 체납 발생 초기 단계부터 채무자 재산 현황을 정기 추적하고 재산 회복 시 즉각 징수가 가능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세입금 환급액이 일반회계 기준 5개 연도 중 최고 수준인 약 27.5억원을 기록하였으며, 법령개정 사유 환급이 전년도 사실상 0원에서 약 7.8억원으로 급증하고 납세자착오 환급도 약 1.7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환급 사유별 예산 편성 반영체계를 정비하고, 고지서 양식 개선과 시스템 차원의 납세안내 체계 정비가 필요합니다.

한편 지방세 미수납액 중 납세태만 비중이 38.13%로 전년 대비 12%p 상승한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류·공매·번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인력을 당초 정원

인 3명으로 조속히 환원하여 소액채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은 70.2%로 전국 평균(61.2%) 및 충남 평균(67.7%)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행강제금과 차량관련 과태료 두 세목의 미수납액 합계가 전체의 약 90.0%를 차지하는 편중 구조가 확인된 만큼 이 두 세목에 대한 집중적인 징수 대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이월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2025회계연도 이월액은 전년도보다 299억원 감소한 1,110억원으로 개선되었으나, 명시이월 393억원, 계속비이월 623억원, 사고이월 94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속비이월 규모가 여전히 방대합니다.

특히 5년 평균 이월률이 13.6%로 높은 수준이며, 명시이월된 사업이 사고이월로 재전환되는 반복적 패턴이 이번 검사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월과다는 의회가 확정된 예산 배분을 왜곡하고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환류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시설비의 경우 설계·보상·공사 단계에 따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계속비 사업의 연간부담액을 실적과 연계하여 조정하며, 이월사업 집행 관리책임관제 도입과 집행부진 부서에 대한 부서평가 연계 등 실질적 이월 감축 방안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셋째, 성과관리 체계의 실질화입니다. 2025회계연도 성과지표 157개 중 미달성은 37개(23.6%)로 전년도 48개(29.3%) 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나, 합산 달성률 76.4%는 2021~2023회계연도 평균(약 80%)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성과지표 수 자체도 181개→164개→157개로 매년 감소하고 있어 지표 축소를 통한 성과관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13개 이상의 성과지표가 단순 예산집행률을 측정산식으로 활용하고 있어, 정책이 군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였는지를 측정하는 결과(Outcome) 지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교육체육과·보건의료원·기획예산담당관 등 특정 부서에서 복수 연도에 걸쳐 반복적으로 미달성이 발생

하고 있는 점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성인지 결산서의 경우 18개 사업 중 목표달성률이 50.0%에 그치고 10개 사업에서 향후 개선사항이 공란 또는 해당없음으로 처리되는 등 자체평가의 형식화가 전반에 걸쳐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방문보건 사업에서 실제 수혜자 성별 데이터와 정반대의 원인이 서술된 명백한 오기는 결산서 전체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사안으로 즉각적인 정비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태안군의 성인지 예산비율은 0.81%로 충남 평균(4.15%)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어서 성인지 예산 편성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넷째, 기금 운용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2025년 말 기준 전체 기금 예치 잔액은 약 84억원이나, 대부분의 기금이 회계상 100%에 근접한 집행률을 기록함에도 이는 예치금 처리에 의한 외형적 수치에 불과합니다. 자활기금의 실질 사업비 집행률은 1.0%, 태안군고향사랑기금은 0.2%, 영묘전주민지원기금은 0%로 기금 설치 목적과 실제 운용 간의 괴리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한 「지방기금법」 제6조 제2항 개정(2021년)으로 연기금 투자폴 위탁 운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실제 활용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에서 태안군도 여유자금을 저금리 예치에만 방치하고 있어 시장 수익률 기반의 자산 증식 기회를 지속적으로 상실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실질 사업비 집행률을 별도 지표로 설정하여 공개하고, 실질 집행률이 저조한 기금에 대해서는 존치·통폐합 여부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의회 검토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다섯째, 예산과정의 제도적 절차 준수와 주민참여의 확대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전용 8건(316,276,000원) 중 안전관리과 대설·한파대책비의 공공운영비→시설비 전용, 관광진흥과의 배상금→사무관리비 전용, 도시교통과의 민간위탁금→시설비 전용 등은 편성 단계의 법령 검토 미흡 또는 과목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용 제도의 취지와 거리가 있으며, 8건 중 3건이 12월 23일과 29일에 집중되어 있어 연말 사후적 과목 조정 패턴이 관찰됩니다. 또한 예비비 집행잔액이 목적예비비(재해·재난) 기준 3억원 발생하여 지출결정액 산정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86건의 주민 제안 중 실제 편성된 사업은 6건(채택률 6.9%), 편성액은 7,100만원에 불과하며, 주민세 개인분 수납액(약 26.1억원) 대비 환원 비율이 2.72%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제도적 성과와 실질 예산 간의 괴리가 큼니다.

미운영 상태인 태안여객자동차터미널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현행 유효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자치법규 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조속한 정비 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재무구조 개선입니다. 상수도 공기업의 순세계잉여금이 2024회계연도 +15.8억원에서 2025회계연도 △2.6억원으로 적자 전환되었으며, 하수도 공기업은 외형상 흑자 전환이나 이는 대규모 집행부진(계속비이월 38.2억원)에 따른 구조적 결과입니다.

환경부 통계(2024년 기준) 기준 상수도 요금현실화율 74.4%, 하수도 45.3%로, 특히 하수도는 생산원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연간 수백억원 규모의 일반회계 전입금 보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요금현실화율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매출원가가 타 지역 평균을 상회하는 원인 분석과 운영 효율화 방안을 병행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태안여객 퇴직연금 과소 적립액이 약 5.96억원에 달하고 있어 운영비 집행 시 퇴직적립금 우선 충당이 요구됩니다.

일곱째, 지방보조사업 및 문화유산 관리의 적정성입니다. 농정과·농업기술센터·가족정책과 등 다수 부서에서 「지방보조금법」 제17조에 따른 실적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농정과의 가축방역 관련 3개 사업은 결산검사 시점까지도 정산보고서가 미제출 상태입니다. 실적

보고 지연에 대한 보조금 삭감 등 제재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등록문화유산인 ‘태안읍 동문리 근대한옥’ 보수정비 설계비 1억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하여 사업비 11.8억원 확보 기회를 상실하고 향후 3년간 국비지원 제재를 받게 된 사안은 문화유산 보존관리 의무 소홀 및 적극행정 미흡의 사례로, 설계 재추진과 긴급 안전점검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태안군의 긍정적 성과도 확인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 18.7%p 개선,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등급 획득, 주민 제안 건수 41% 증가, 이월금의 전년 대비 299억원 감소 등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거둔 사례들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6만여 태안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태안군 공무원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태안군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통해 시정과 개선을 권고한 여러 사항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군정 정책수립과 예산의 계획·집행·결산·환류 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목록

연번	건명	개선 및 권고사항
1	세입예산 과소추계 문제 해소 노력	과소추계 방지를 위해 전년도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한 실제 세입을 기준으로 놓고 편성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세 미수납액 부과징수 관리 철저	미수납을 해결하려면 납세의식 제고를 기본으로하여 고질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 강화와 맞춤형 징수 방안 추진이 요구됨
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징수율 제고 노력	부과와 징수가 분리로 징수율이 낮고, 장기 체납화 방지를 위한 연도 내 조기 정리 원칙을 확립 및 연도별·세목별 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부과부서에서 적극적인 징수율 제고에 힘써야할 필요가 있음
4	세입금 정리보류 급증에 따른 체납채권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필요	정리보류는 세입 규모와 재정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리보류 축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5	세입금 환급, 보조금 반환 및 납세자착오 환급의 개선 노력 중요	상위기관의 세제 및 보조금 관련 법령·지침 개정 동향을 예산 편성주기와 연동하여 상시 검토하는 체계 구축
6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분석	재정자립도·자주도를 높이기 위한 세입확충, 신규세원 발굴, 지방세 징수율 제고, 기업유치, 의존재원 확보 등 노력이 필요함
7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및 편성 규모 확대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 사업 위주에서 벗어나 지역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규모 사업으로 편성 규모의 단계별 확대 권고

연번	건 명	개선 및 권고사항
8	예산 전용의 반복적 편성 오류 및 적정성 검토	법령 미검토나 과목 오류에서 비롯된 전용이 반복될 경우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취지를 형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사전 관리 요구
9	예비비 지출 집행잔액 과다	정확한 예비비 지출 예산을 산정하고 연말에 긴급하게 편성하고 집행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권고
10	이월비 및 결산상 잉여금 관리 실효성 제고	이월 사유 및 범위의 명확화를 전제로 세부 내역을 공개하여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고, 특히 집행률 70% 미만인 주요 사업의 경우 철저한 원인 분석을 병행 주기적 점검 체계를 가동하여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공모사업을 지양함으로써 사업 부진 및 이월액 누적 사례를 근본적으로 축소
11	성인지예산비율 저조	성인지예산의 성평등 실현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균형있는 분배,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 검토 필요
12	성인지 결산서의 실질화 방안 마련 필요	결산서 작성 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전문가 또는 총괄부서가 사업별 특성에 맞는 작성 방향을 안내하는 사전 컨설팅 절차 도입
13	기금의 연기금 투자 검토	전국적으로 선례가 없으나 기금별 유동성 요건 및 지출 주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초로 장기 여유자금의 범위를 우선 확정, 타 기관의 제도 도입 동향과 운용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연기금 투자폴 위탁 운용 방안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 나갈 것을 권고
14	기금 사용액 및 실질 사업비 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	기금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질 사업비 집행률을 별도 지표로 설정하고 성과보고서와 함께 공개하는 방안 검토

연번	건 명	개선 및 권고사항
15	미운영 특별회계의 정리 필요	태안여객 자동차터미널 관련 사업이 장기간 일반회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온 현실을 고려할 때,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은 사실상 달성된 것으로 해당 특별회계의 조속한 조례 정비가 필요함
16	태안여객 퇴직급여충당금 과소 적립	운영비 지출시 우선적으로 퇴직금충당금에 맞춰 적립할 것을 권고
17	상·하수도 특별회계 적자 운영 및 회계 관리 개선 필요	고질적인 적자 문제를 점진적으로나마 해소하기위해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운영에 관한 검토 분석 및 특별회계의 전반적인 운영시스템 기능에 대한 검토와 회계기준에 대한 교육 강화 권고
18	성과목표 달성 현황 및 성과관리 체계 개선 필요	반복적인 미달성 부서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개선계획이 필요하며, 성과중심적 접근 형식이 아닌 실질로 구현될 수 있는 성과 지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19	개별 성과 지표의 수정 및 보완 필요	집행률이 현저히 낮거나 과도하게 높게 산출된 지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
20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성과평가 관리 강화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 준수와 기한 미준수시 법적 근거에 따라 예산 감액이 필요함
21	「태안읍 동문리 근대한옥」 보수정비 사업 설계비 반납에 따른 문화유산 보존관리 소홀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보수정비 사업의 추진, 관리실태 점검 및 긴급조치 시행 등 조속한 조치 필요

1. 세입예산 과소추계 문제 해소 노력

1. 현 황

- 세입의 과소추계란 지자체 재정수입인 세수 규모를 의도적으로 낮게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 2025년도 태안군의 예산 대비 결산액을 비교해 보면 당초예산이 759,107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 979,029백만원, 세입결산액은 965,331백만원이다.
- 분석 결과 징수결정액 대비 당초예산이 77.5%이고 세입결산액 대비 78.6%다. 이는 상당한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이다.

태안군 최근 5년 예산 대비 결산액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당초예산	557,341	634,650	687,953	658,484	759,107
세출결산	650,079	719,992	774,310	753,993	811,362
징수결정액	894,999	768,720	904,995	881,356	912,601
세입결산	760,598	885,874	971,646	934,780	965,331

2. 문 제 점

- 이 같은 세입예산 과소추계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의도적으로 낮게 예측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전년도 본 예산을 기준으로 세입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하고 있는 것이다.
- 세입추계를 의도적으로 낮게 가져가면 당연히 예산 규모가 작아져서 군민들이 받는 공공서비스와 정책 수혜가 줄게 된다.
- 지자체는 과소추계 후 초과 세입이 들어오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추가경정예산이 지나치게 규모가 커지게 된다.

3. 개선 및 권고사항

- 과소추계를 방지하려면 전년도 실제 세입을 기준으로 놓고 편성해야 한다. 즉 추가경정예산까지 모두 반영된 세입 결산안을 근거로 예산 규모가 책정되어야 한다.
- 또한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과 결산액이 꼭 같을 수는 없지만 과다하게 차이가 날 경우 예산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없다.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공무원들은 전년도 징수율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지방세 미수납액 부과징수 관리철저

1. 현 황

- 태안군의 최근 3년 평균 징수결정액은 899,650백만 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다.
- 다만 4대 주요 미수액인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는 전년도보다 크게 웃돌고 있어 미수납 방지에 분발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세 수입 사유별 미수납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총미수액	무 재 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부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25	8,949	303	3.38	563	6.29	3,412	38.13	484	5.41
2024	12,791	368	2.88	558	4.36	3,402	26.60	286	2.24
2023	10,959	1,020	9.31	604	5.51	5,612	51.21	392	3.58

- 2025 회계연도 태안군 지방세 미수납액은 전체 미수납액 중 납세태만액의 비중이 38.13%로 전년도에 비해 12% 상승하였으며, 소송계류(26.87%), 자금압박(15.55%), ‘납기 미도래(3.71%)’ 순이다

2. 문 제 점

- 총 미수납액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의 비율이 증가했다. 이는 미납금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고 한 번 체납된 세금은 재징수가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 따라서 최초 징수 시에 적극적인 징수와 끝까지 추적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개선 및 권고사항

- 기본적으로 미수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납세의식 제고는 물론, 고질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압류, 공매, 변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 강화 등 맞춤형 징수방안 추진이 요구된다.
- 또한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징수 불능 세금은 과감하게 정리 보류 조치하되, 정리 보류 결정전에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 이와 함께 무재산 상태로 사망하였거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 정리 보류로 관리할 실익이 없음으로 조기 소멸 완성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 한편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납세자 맞춤형 징수유예·분할납부 제도 등 현실적·전략적 징수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3.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징수율 제고 노력

1. 현 황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과 달리 각종 행정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지닌 세외수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징수 결정을 거쳐 거두어들이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부담금 등을 포함한다.
- 이러한 성격상 관리가 소홀해질 경우 법적 규범력 확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정한 징수 관리가 요구된다.
- 세외수입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면, 2025회계연도 태안군 세외수입 징수율은 77.78%로 지방세 징수율(93.7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 이는 세외수입의 경우 부과와 징수가 분리된 구조로 운영되어 유기적인 징수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며,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에 비해 임시적 세외수입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 태안군의 2025회계연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결정액은 1,301,643,39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13,959,660원으로 징수율 70.2%를 기록했다.
-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3회계연도 47.0%, 2024회계연도 51.5%, 2025회계연도 70.2%로 3개 연도 연속 개선 추세가 확인된다.

태안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연도별 징수율 현황

(단위: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	실제수납	정리보유액	미수납액	징수율
2023	2,333,712,000	7,931,305,940	3,730,444,040		4,201,361,900	47.0%
2024	2,433,342,000	5,033,841,190	2,594,822,640	295,940	2,433,722,610	51.5%
2025	947,244,000	1,301,643,390	913,959,660	948,600	386,735,130	70.2%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태안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70.2%)을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전국 평균(61.2%), 충남지역 평균(67.7%)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전반적인 징수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 문 제 점

- 전체 미수납률은 2024회계연도 52.9%에서 2025회계연도 29.7%로 23.2%p 개선되었고, 미수납액 절대액 역시 2,429,691,610원에서 386,735,130원으로 약 84% 감소한 점은 긍정적임. 그러나 이러한 개선의 실질성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 235목 환수금의 경우 미수납률이 57.6%에서 17.2%로 대폭 개선된 것처럼 보이나, 이는 징수 노력의 성과라기보다 징수결정액 자체가 3,250,992,290원에서 60,127,290원으로 약 54배 급감한 데 따른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다.
- 전체 미수납액 감소의 상당 부분이 환수금 징수결정 규모의 축소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하면, 이를 순수한 징수율 개선 성과로 단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세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232목 이행강제금과 234-01목 차량관련 과태료로의 미수납 편중 현상이 두드러진다.
- 이행강제금의 미수납률은 57.2%에서 48.0%로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징수결정액이 미수납 상태이며, 미수납액 190,829,280원은 전체 미수납액(386,735,130원)의 49.3%를 차지하는 최대 비중이다.
- 차량관련 과태료는 미수납률 35.8%로 미수납액 157,373,200원이 전체의 40.7%를 차지하고 있어 관리 취약 세목으로 분류된다.
- 결국 이 두 세목의 미수납액 합계(348,202,480원)가 전체 미수납액의 약 90.0%에 달하는 극도의 편중 현상이 확인된다.

태안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세목별 미수납 비교 현황

목	세목명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미수납률 변화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미수납 률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미수납 률	
합계		4,592,474,800	2,429,691,610	52.9%	1,301,643,390	386,735,130	29.7%	-23.2%p
231	과징금 (교정금)	105,583,440	101,453,440	96.1%	18,138,500	4,069,250	22.4%	-73.7%p
232	이행강제금	354,959,230	202,910,760	57.2%	397,231,450	190,829,280	48.0%	-9.2%p
233	변상금	47,217,910	128,980	0.3%	26,769,260	4,208,630	15.7%	+15.4%p
234	과태료	595,359,960	221,024,330	37.1%	584,562,170	172,743,000	29.6%	-7.5%p
234-01	차량관련 과태료	452,485,600	203,925,130	45.1%	440,021,950	157,373,200	35.8%	-9.3%p
234-02	기타 과 태료	142,874,360	17,099,200	12.0%	144,540,220	15,369,800	10.6%	-1.4%p
235	환수금	3,250,992,290	1,873,255,210	57.6%	60,127,290	10,325,950	17.2%	-40.4%p
236	부담금	237,561,970	30,918,890	13.0%	214,814,720	4,559,020	2.1%	-10.9%p
237	병척금	800,000	0	0.0%	400,000	0	0.0%	0.0%p
※ 미수납률 = 미수납액 ÷ 징수결정액 × 100 / 단위 : 원 ※ 음영: 2025회계연도 미수납률이 높은 집중관리 세목(232 이행강제금, 234-01 차량관련과태료) 및 전 년 대비 징수결정액 및 미수납액이 현저히 감소한 세목(235 환수금)								

- 한편 233목 변상금은 2024회계연도에 미수납률 0.3%로 사실상 완전 징수에 근접한 실적을 보였으나, 2025회계연도에는 15.7%로 15.4%p 상승하여 유일하게 미수납률이 전년 대비 악화된 세목이다.
- 변상금은 공유재산 훼손·망실 등 행정재산 보호와 직결되는 세목인 만큼 퇴보의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 구조적 차원에서는 부과와 징수가 분리된 행정체계 문제도 상존함. 부과부서에서 징수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이 희석되기 쉬우며, 담당직원 교체 시

인수인계 불충분으로 체납이 발생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파악된다.

- 아울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후순위 채권에 해당하여 압류한 건물·차량 등을 공매·경매하더라도 국세·지방세, 사회보험료 등 우선순위에 밀려 실질적인 채권 회수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존재한다.

3.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차원에서 부과·징수하는 세외수입의 일종으로, 그 적절한 관리는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공공질서 유지와 법적 정합성 확보에도 필수적임.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 조치의 이행이 긴요하다.
- 이행강제금과 차량관련 과태료에 대한 집중적·체계적 징수 대책 수립이 최우선 과제임. 두 세목의 미수납액이 전체의 약 90%에 달하는 편 중 현상이 확인된 만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반복 위반자에 대한 가산 부과 및 재산 압류·공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차량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견인 및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체납 관리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233목 변상금에 대해서는 미수납 발생 원인과 대상자별 체납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조기 정리 방안을 마련하고, 변상금 부과·징수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내부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 231목 과징금(교정금)과 236목 부담금에서 효과를 거둔 우수 징수 관리 방식을 내부적으로 공유·표준화하여, 미수납률이 높은 이행강제금 및 차량관련 과태료 세목에 동일한 관리 역량을 전파하는 것이 바람직함. 우수 사례의 내부 확산은 추가적인 행정 자원 투입 없이도 전체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 부과부서의 징수 책임의식 제고 측면에서는, 부과와 징수 분리 구조 하에서도 부과부서가 징수율 관리에 적극 관여하도록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담당직원 교육 강화 및 인수인계 체계화를 통해 직원 교체로 인한 체납 발생을 차단하여야 함. 부서별·세입목별 징수부진 사유를 파악하기 위한 정기 자체평가 및 징수대책회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세목별 징수 목표를 설정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
- 당해연도 미수납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장기 체납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연도 내 조기 정리 원칙을 확립하고, 연도별·세목별 성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징수율 개선 추세가 일시적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아울러 후순위 채권 문제에 따른 강제집행의 실효성 한계는 현행 법령 체계상 단기간 내 해소가 어려운 구조적 과제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4 세입금 정리보류 급증에 따른 체납채권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필요

1. 현 황

- 태안군의 세입금 정리보류(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2021~2025회계연도 연도별 총액은 최소 약 7.7억 원(2023년)에서 최대 약 43.3억 원(2025년)까지 폭넓은 변동 양상을 보인다.
- 구체적으로 2021년 약 9.1억 원, 2022년 약 9.5억 원에서 2023년 약 7.7억 원으로 일시 감소하였다가, 2024년 약 10.2억 원, 2025년 약 4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5배 급증하는 추이가 확인된다.
- 사유별 구성을 보면 무재산이 전 기간에 걸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2025년에는 무재산 사유만으로 약 39.1억 원(전체의 약 90.3%)에 달하는 이례적인 집중 현상이 나타난다.
- 평가액부족 역시 주요 사유로 2022년 약 4.5억 원(47.2%), 2024년 약 4.9억 원(47.7%)으로 상당한 규모를 유지해 왔으며, 소멸시효완성은 2021년 약 6.3억 원(7.0%)에서 이후 연도에는 1억 원 미만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 행방불명 사유는 연도별 규모는 크지 않으나, 전 기간에 걸쳐 소규모이나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세목별로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양 영역 모두에서 정리보류·결손처분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세 중 지방소득세 및 보통세,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지난연도수입)이 주된 발생 원인이다.

(단위:천원)

연도	정리보류액	무재산	평가액부족	소멸시효완성	행방불명	배분금액부족 등 기타
2021	911,762	522,678(57.3%)	316,068(34.7%)	63,346(7.0%)	7,861(0.9%)	1,808(0.2%)
2022	954,690	375,900(39.4%)	450,570(47.2%)	39,821(4.2%)	29,754(3.1%)	58,643(6.1%)
2023	767,942	484,352(63.1%)	247,031(32.2%)	9,023(1.2%)	27,533(3.6%)	—
2024	1,018,112	452,288(44.4%)	486,160(47.7%)	8,668(0.9%)	15,841(1.6%)	55,133(5.4%)
2025	4,325,690	3,906,614(90.3%)	371,244(8.6%)	15,171(0.4%)	13,327(0.3%)	19,331(0.4%)

2. 문 제 점

- 2025년 정리보류액의 급격한 증가는 무재산 사유가 전년 대비 약 7.6배 증가한 데 기인하는 바, 채무자의 실질적 담세(擔稅) 능력 부재가 해소되지 않은 채 누적됨에 따라 세입 징수의 실효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
- 특정 연도에 과도하게 집중된 무재산 정리보류는 담당 부서의 일상적 체납 관리 과정에서 발생 징후가 적절히 포착·관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내포한다.
- 평가액부족 사유의 경우, 체납 재산이 존재하더라도 실질 징수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 담보 재산의 가치 하락 또는 공매 유찰 반복 등으로 잔여채권이 회수 불능 상태로 남겨지는 사례가 지속되는 것으로, 체납처분 절차

개시 이후에도 적정 환가(換價)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태가 반영된 것이다.

- 소멸시효완성은 초기 연도 대비 규모가 감소하였음에도 2025년 소폭 재증가한 점은, 체납채권에 대한 시효 중단 조치의 적시성 확보가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 아울러 세외수입 분야에서 임시적세외수입(지난연도수입)을 중심으로 한 정리보류가 전 연도에 걸쳐 지속 발생하고 있어, 비세금 수입에 대한 체계적 징수 관리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3. 개선 및 권고사항

- 현재 징수 담당 인력이 제한된 여건에서 체납 정리와 세입 관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보류는 세입 규모와 재정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만큼, 인력·자원 제약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정리보류 축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무재산으로 인한 정리보류 급증에 대응하여, 체납 발생 초기 단계부터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정기적으로 추적·모니터링하고 재산 회복 시 즉각적인 징수가 가능하도록 체납채권 사후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할 것을 권고한다.

- 정리보류 처리 이후에도 채권이 소멸될 때까지 이행 가능성 점검을 지속해야 하며, 특히 2025년 급증 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여 특정 채납자군(예: 고액·상습 채납자, 특정 업종·지역) 또는 세목에 집중된 구조가 확인될 경우 그 대상을 중심으로 전담 관리, 업종·지역별 맞춤형 징수 전략, 복지 연계 등 세입 개선 효과가 큰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평가액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채납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공매 유찰이 반복되는 경우에 적용할 최저입찰가 단계적 조정 기준 및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공매 낙찰 가능성을 높이고, 채납처분의 실질적 징수 연계율을 제고하며, 잔여채권이 평가액부족 사유로 전환되는 비율을 최소화해야 한다.
- 인력과 행정력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공매·압류 등 일련의 채납처분 절차를 단순 반복하기보다 징수 가능성이 높은 대상과 방식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함. 연계율을 높이고 잔여채권의 평가액부족 전환을 최소화해야 한다.
- 소멸시효 완성 방지를 위해, 채납 발생 후 일정 기간(예: 6개월) 이내에 독촉·압류 등 시효 중단 조치를 실시하도록 내부 규정상 의무화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하는 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 특히 담당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시효 임박 채권을 자동으로 추출·알림하는 시스템을 AI 등으로 활용하는 등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수적인 시효 관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고지·발생 시점부터 문자·우편·전자 고지 외에도 최근 다수의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 알림톡 등 모바일 메신저와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활용하여 납부기한·금액·납부방법을 직관적으로 안내하고, 전자고지서 내 QR코드·간편결제(앱·카드·계좌이체) 연계, 납부기한의 월말 일원화 등을 통해 즉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납부편의 중심의 고지 방식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 아울러, 납부자 주소·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사전에 정비하고, 세외수입 시스템과 관련 부서 업무 시스템을 연계하여 발생 즉시 자동 부과·고지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고지 누락·지연을 최소화하고, 일정 기간(예: 1년) 이상 미징수 상태가 지속되는 장기 체납 채권에 대해서는 금액 규모와 징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한 뒤, 주기적 일제 점검 및 정리를 할 것을 권고한다.

5. 세입금 환급, 보조금 반환 및 납세자착오 환급의 개선 노력 중요

1. 현 황

연도별 환급 총괄

(단위: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증감	2023년	증감	2024년	증감	2025년	증감
합 계	2,726,001	5,284,473	2,558,472	8,521,678	3,237,205	1,674,135	-6,847,543	2,746,934	1,072,799
일반회계	2,364,068	2,001,222	-362,846	2,468,772	467,550	1,658,617	-810,155	2,746,934	1,088,317
특별회계	361,933	3,283,251	2,921,318	6,052,905	2,769,654	15,518	-6,037,387	—	—

- 합계 기준 2022년·2023년의 급등은 특별회계 기타 항목(2022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243,330,430원 등, 2023년 동일 사업 4,067,034,270원 및 의료급여기금운영 1,935,468,000원)의 대규모 내부거래 계상에 기인하므로, 5개 연도 실질 비교는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2022년 소폭 감소, 2023년 반등, 2024년 감소, 2025년 재급등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으며, 2025년은 5개 연도 중 최대 수준을 기록하였다.

연도별 사유별 환급액 추이(일반회계 기준)

(단위:천원)

사유	2021년	2022년	증감	2023년	증감	2024년	증감	2025년	증감
행정기관 착오	316	7,344	7,028	—	-7,344	—	—	3	—
납세자 권리구제	121,140	14,637	-106,503	1,058,159	1,043,522	216,320	-841,839	118,685	-97,635
납세자착오	74,345	93,983	19,638	127,117	33,134	58,277	-68,840	171,172	112,895
차량미등기	68,361	67,307	-1,054	73,851	6,544	80,312	6,461	65,704	-14,608
국세경정	198,080	143,478	-54,602	337,028	193,550	323,727	-13,301	241,744	-81,983
법령개정	55,510	19,470	-36,040	9	-19,461	—	-9	779,837	779,837
법인정산	314,702	75,519	-239,183	289,451	213,932	219,439	-70,012	220,447	1,008
내부거래	※기타포함	※기타포함	—	572,030	—	290,936	-281,094	706,066	415,130
기타	1,531,612	1,579,485	47,873	11,127	-1,568,358	469,607	458,480	443,276	-26,331
합계	2,364,068	2,001,222	-362,846	2,468,772	467,550	1,658,617	-810,155	2,746,934	1,088,317

- 2021~2022년의 내부거래 항목은 별도 구분 없이 기타에 포함되어 있어 직접 비교 시 유의 필요하며, 또한 2021년 기타에는 지방교부세 700,000,000원 · 보조금 818,440,000원, 2022년 기타에는 보조금 1,292,119,710원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연도 기타 비중이 외형상 높게 나타난다.
- 주요 사유별 5년간 추이를 보면, 납세자권리구제 환급은 2023년 1,058,159,390원으로 이례적으로 급등한 이후 2024년 · 2025년 연속 감소하여 2025년은 5개 연도 중 2022년(14,637,340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 납세자착오는 2021~2023년 완만한 증가 후 2024년 급감, 2025년 재급등하는 패턴을 보이며 2025년은 5개 연도 최고치를 기록함.
- 법령개정 환급은 2021년 55,510,320원에서 2022년 · 2023년 소멸에 가까운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가 2025년 779,836,680원으로 5개 연도 최대치를 기록하는 급격한 변동을 보인다.
- 내부거래는 2023년 신규 항목 분리 이후 2024년 감소 · 2025년 재급등 패턴이 확인된다.

주요 세목별 추이 (일반회계)

세목	2021년	2022년	증감	2023년	증감	2024년	증감	2025년	증감
지방소득세	433,080	376,316	-56,764	575,539	199,223	1,064,998	489,459	993,403	-71,595
재산세	3,659	7,674	4,015	7,026	-648	129,998	122,972	35,251	-94,747
자동차세	67,582	65,482	-2,100	70,902	5,420	80,844	9,942	67,095	-13,749
보조금	818,440	1,292,120	473,680	405,556	-886,564	277,087	-128,469	705,966	428,879

- 지방소득세 환급은 2024년에 전년 대비 85.0% 급증하여 5개 연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5년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5개 연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2022년 대비 2024년은 182.9% 증가한 수준이다.

- 재산세는 2024년의 1,750.5% 급증과 2025년의 72.9% 급감으로 5개 연도 중 변동 폭이 가장 큰 세목이다.
- 보조금 환급은 2022년 5개 연도 최고치(1,292,119,710원) 이후 2023~2024년 2년간 연속 감소하다가 2025년 154.8% 재급등하여 불규칙한 대폭 등락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2. 문 제 점

- 5개 연도 전반에 걸쳐 가장 두드러지는 구조적 문제는 주요 환급 사유별 규모의 극단적 등락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임. 이는 환급이 특정 연도의 우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 및 세입 관리 체계 전반에 걸친 구조적 취약성이 매년 다른 형태로 발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법령개정 환급(2025년 779,836,680원)이 전년도 사실상 제로 수준에서 급증한 것은, 그 자체로는 세제 개정(세율 인하, 감면 확대, 적용대상 확장 등)에 따른 정상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결산검사의 관점에서 핵심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해당 급증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예측 가능한 사항이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세입 관리·납세자 보호 측면의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여부이다. 2021년(55,510,320원)·2022년(19,469,760원)·2023년(사실상 0원)·2024년(0원)에서 2025년 779,836,680원으로의 급등은, 해당 법령 개정이 예측 가능하였음에도 세입예산 편성 시 환급 예상액이 반영되지 않아 과다 세입 추계가 이루어졌거나, 환급 재원 확보 없이 집행 후 재정운용 부담을 초래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특히 보조금 세목 환급이 같은 연도에 154.8% 급반등하였다는 점에서, 상위기관 법령·지침 변경에 따른 보조금 반환 규모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법령 개정에 따른 환급 대상과 절차가 납세자에게 충분히 사전 안내되었는지, 신청한 사람만 환급받는 구조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
- 내부거래 환급은 2023년 별도 항목으로 분리된 이후 2024년 감소·2025년 재급등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2021~2022년의 기타 항목 내 대규모 보조금·지방교부세 환급 포함 규모를 감안하면 내부거래 관련 환급은 훨씬 장기간 구조적으로 누적되어 온 문제이다.
- 5년간 기타 항목이 연도별로 11,127,040원에서 1,579,484,650원까지 극단적 편차를 보인다는 사실 자체가, 환급 사유 분류 체계가 일관되게 운용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
- 2023년 이후 내부거래가 별도 항목으로 분리된 것은 개선이나, 2024년·2025년에도 기타 항목이 전체의 16% 내외를 점유하며 고착되는 현상은 분류 기준 자체의 부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준다.
- 납세자착오 환급은 2024년 감소가 일시적이었음이 2025년 급반등으로 확인되었으며, 5개 연도 전체로 보면 완만한 증가 추세(2021년 74,345천원→2025년 171,172천원)가 지속되고 있다. 행정기관착오 환급이 5년간 미미한 수준(최대 7,344천원)에 그치는 것과의 대비는, 과세 행정의 정확성은 상당 수준 확보되어 있으나 납세자 대상

안내 체계는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구조적으로 보여준다.

- 세목별 비과세·감면 기준, 신고방법, 납부기한·세액 산정 방식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다면 줄어들 수 있는 착오가 여전히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납부 안내·고지 체계의 충분성 및 이해가능성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임을 시사한다.
- 특히 신고·선납 방식 세목에서 납세자착오가 집중될 경우, 세목 구조·신고절차의 복잡성이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2024년 일시 감소 후 2025년 재급등한 패턴은 해당 연도의 안내 강화 등이 일회성 조치에 그쳤을 뿐, 조례 개정·안내문 및 고지서 양식 정비·전자납부 화면 개선 등 제도·시스템 수준의 정착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 과도한 납세자착오 환급은 환급 처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민원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착오와 납세자착오를 통합적 시각에서 함께 관리하는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 행정기관착오 환급이 5년간 미미한 수준(최대 7,343,560원)에 그치는 것과의 대비는, 과세 행정의 정확성은 상당 수준 확보되어 있으나 납세자 대상 안내 체계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구조적으로 보여준다.
- 지방소득세 환급이 2024년·2025년 연속으로 9억~10억 원대를 기록하며 5개 연도 중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세경정 및 법 인정산 사유와의 연동 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나, 이미 2년 이상의 추이가 확인된 시점에서도 세입 예산에 환급 예상액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는 예산 추계의 비현실성 문제로 귀결된다.

3. 개선 및 권고사항

- 법령개정 사유 환급은 제도 변화에 따른 정상적 결과이나, 5개 연도 추이에서 확인되듯 해당 환급 규모가 예산 편성 주기와 무관하게 급등락하는 구조는 세입 추계의 비현실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 상위기관의 세제 및 보조금 관련 법령·지침 개정 동향을 예산 편성 주기와 연동하여 상시 검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세입예산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법령 개정에 따른 환급 대상과 절차를 납세자에게 충분히 사전 안내하여 신청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반복적으로 과오납·환급이 발생하는 세목에 대해서는 상위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 내부거래 환급의 반복적 급등 패턴을 차단하기 위해 회계 간 전입·전출 정산 기준 및 절차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정기 점검 체계를 별도로 운용하여 정산 오류를 사전에 식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5년간 환급 사유 분류 체계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기타' 항목에 대한 세부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연도 간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 과제이다.
- 납세자착오 환급의 장기적 증가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일회성 안내 강화에 그치지 않고 제도·시스템 수준의 구조적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 구체적으로는 세목별 납부 기준·세액 산정 방식·신고절차에 관한 안내문 및 고지서 양식을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정비하고, 전자납부 화면 개선 등 시스템 차원의 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 착오가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세목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절차의 복잡성 자체가 근본 원인인지를 검토하여 조례 개정 또는 상위기관 제도 개선 건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아울러 행정기관착오와 납세자착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환급 처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민원 발생을 구조적으로 줄여나갈 것을 권고한다.
- 지방소득세 환급은 2024~2025년 연속 9억 원대 이상 수준이 확인된 만큼, 전년도 국세 신고 동향 및 법인 수익 현황 등 선행 지표를 활용한 환급 규모 예측 모델을 운용하고 이를 세입 예산 편성 시 명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6.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분석

1. 현 황

- 재정 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얼핏 비슷한 용어 같지만 실제로는 의미가 다르다. 이 지표를 정확히 이해해야 지역 발전과 재정 건전성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다.
- ‘재정 자립도’는 말 그대로 얼마나 자체적으로 세입을 마련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재정 자립도는 중앙정부 보조금이나 교부세는 제외되며 오직 자체 재원만 반영한다.
 - 계산공식 :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세입총액×100(%)
- ‘재정자주도’는 단순한 자체 세입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쓸 수 있는 외부재원까지 포함된다.
 - 계 산 공 식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지 방 교 부 세 + 조 정 교 부 금) ÷ 일 반 회 계 세 입 총 액 × 100(%)
- 재정 자립도는 교부세 등 자율적 재원을 제외하다 보니 실제보다 과도하게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재정자주도는 교부세 자체도 결국 국가에 의존하는 성격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두 지표를 혼동하거나 단순 비교하면 정책 혼란과 지역 간 불균형이 왜곡될 수 있다.

태안군 최근 5년 재정자립도

(단위:%)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유형평균	17.6	18.4	18.5	18.0	17.7
태 안 군	10.8	12.1	14.2	12.5	12.5

태안군 최근 5년 재정자주도

(단위:%)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유형평균	58.7	58.5	55.3	55.3	55.6
태 안 군	57.9	60.0	59	58.8	58.7

- 2025년 태안군의 재정자립도는 12.5%이고 재정자주도는 58.8%이다
 재정자립도는 유형평균보다 낮은편이다. 반면에 재정자주도는
 유형평균보다 높다. 이는 자체재원 비율이 낮고 의존재원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2025년 충남 재정자립도 및 자주도

○ 재정자립도

연도별	전체평균			시			군		
	계	도	시군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2025	32.2	31.6	18.8	22.9	천안 33.7	논산 10.7	11.2	홍성 13.7	서천 8.9
2024	32.4	32.2	18.8	22.8	천안 33.4	논산 10.9	11.3	태안 14.2	서천 8.9

○ 재정자주도

연도별	전체평균			시			군		
	계	도	시군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2025	63.7	41.8	54.8	55.9	보령 58.5	아산 53.2	52.7	태안 58.8	서천 49.1
2024	65.4	43.0	55.9	56.1	계룡 67.1	논산 52.5	54.4	금산 59.1	서천 51.2

- 태안군의 재정 자립도는 충남도내 군부에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주도는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그만큼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문 제 점

- 재정 자립도는 교부세 등 자율적 재원을 제외하다 보니 실제보다 과도하게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혹자는 태안군은 재정 자립도가 10%, 11%, 하면서 군정을 평가절하하고 폄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세수 확보가 풍부한 대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을 단순 비교평가하는 것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데서 비롯된다.
- 재정자주도는 교부세 자체도 결국 국가에 의존하는 성격을 띤다. 따라서 두 지표를 혼동하거나 단순 비교하면 정책 혼란과 지역 간 불균형이 왜곡될 수 있다. 다만,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지자체는 정책집행과 예산편성에서 더 큰 자율권과 재량권을 갖을 수 있기 때문에 태안군 입장에서는 자주재원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개선 및 권고사항

-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는 모두 지방재정 상태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다른점이 있다면 재정자립도는 재정확보 능력, 재정자주도는 재원운용 자율성을 강조한다.

- 다시 말해 재정 자립도는 얼마나 자체적으로 세입을 마련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자주도는 얼마나 자유롭게 재원을 쓸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 두 지표를 동시에 고려해야만 지역 발전과 재정건전성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다. 대도시는 상대적으로 세입이 많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높고, 반면에 세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은 자립도가 낮다.
-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입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규세원 발굴, 지방세 징수율 제고, 기업유치 노력 등이 필요하다. 또한 자주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같은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7.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및 편성 규모 확대

1. 현 황

- 태안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주민참여예산 제도 성과평가'에서 2024년 '보통' 등급에서 2025년 '우수' 등급으로 상승하며 제도 운영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 같은 기간 주민 제안 건수 역시 86건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하여, 자치행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 의지가 실질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러나 증가하는 참여 수요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총 6건, 편성액은 7,100만 원에 불과하며, 2025년 태안군 주민세(개인분) 수납액이 약 26억 1천만 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군민의 세 부담 대비 주민참여예산의 환원 규모는 매우 영세한 수준이다.

2. 문 제 점

- 군민이 자치 비용으로 납부하는 주민세 개인분 수납액 대비 주민 참여예산 편성액의 비율은 약 2.72% 수준에 머물고 있어, 군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에 재투입되는 예산이 실질적인 자치 재원으로서의 의미를 갖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 주민 제안 86건 가운데 실제 선정된 사업은 6건으로 채택률이 약 6.9%에 그치고 있어, 대다수의 군민 의견이 예산 편성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낮은 채택률은 참여 제도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향후 참여 동기를 위축시키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의 '우수' 평가는 절차적 보완이나 홍보 강화 등 운영 측면의 개선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나, 실질적인 예산 규모가 뒷받침되지 않는 제도적 성과는 군민이 체감하는 자치행정의 만족도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식적 성과와 실질적 예산 간의 괴리가 존재한다.

3. 개선 및 권고사항

-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규모 확대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재정적 현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우수' 등급 지자체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예산 환원 체계를 중장기적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민세 개인분 수납액의 일정 비율 이상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내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내가 낸 세금이 우리 마을 사업으로 돌아온다'는 군민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한다.
- 아울러 6.9%에 불과한 사업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 부서별 검토 단계를 유연화하고,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 사업 위주에서 벗어나 지역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규모 사업으로 편성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적 제도 운영을 넘어 군민의 자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기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한다.

8. 예산 전용의 반복적 편성 오류 및 적정성 검토

1. 현 황

○ 2025회계연도 중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8건(316,276,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이용은 0건, 예산이체는 조직 개편 및 사무 이관에 따른 정상적 조정 3건(3,081,333,750원)이 처리되었다.

○ 전용 8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예산 전용 현황 >

부서	세부사업	전용내용	전용액	승인일
기획예산담당관	태안 청년 창업 지원	사무관리비→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00	2025.05.19.
행정지원과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전산개발비	23,000,000	2025.09.02.
안전관리과	대설·한파대책비 지원	공공운영비→시설비	17,270,000	2025.12.23.
경제진흥과	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공기관위탁사업비→사무관리비	40,000,000	2025.12.23.
관광진흥과	관광지 기반시설 정비 및 개발	배상금→사무관리비	60,000,000	2025.07.01
도시교통과	도시계획시설관리	민간위탁금→시설비	110,000,000	2025.01.07.
도시교통과	교통시설물 관리	공공운영비→시설비	21,006,000	2025.12.29.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민간경상사업보조	35,000,000	2025.07.01

2. 문 제 점

○ 예산 전용 제도는 예산 편성 이후 사업 내용·수요·단가 등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매번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일정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재원을 재배분할 수 있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순기능을 가진다.

- 8건의 전용 사례 가운데 행정지원과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재난·범죄 긴급 대응), 기획예산담당관의 청년 창업 지원(입주기업 증가 대응),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경영비 절감·공평 지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여건 변화에 대응한 것으로, 전용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사례로 판단된다.
- 그러나 일부 사례는 집행 여건의 변화보다는 당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법령 검토 미흡 또는 과목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용 제도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 안전관리과 대설·한파대책비: 「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6항상 민간보조 및 특정 개인 지원이 불가함에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다가 시설비로 전용한 사례로, 편성 시 관련 법령을 사전에 검토하였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오류이다.
- 관광진흥과 관광지 기반시설 정비: 국유재산 대부료(주차장 사용료)를 법적 손해배상 성격의 지출인 배상금으로 잘못 분류하여 편성하였다가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사례로, 지출 성격에 대한 기본적인 과목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도시교통과 도시계획시설관리: 시설 조성 사업임에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다가 시설비로 전용한 사례로, 사업 내용과 예산 과목간의 정합성이 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 경제진흥과 태안사랑상품권: 매년 반복 시행되는 계속사업임에도 판매·환전수수료 수요를 과소 산정하여 전용이 발생하였음. 전년도 집행 실적을 참고하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항목이었다는 점에서 예산 산정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다.
- 아울러 8건 중 3건이 12월 23일과 29일에 집중되어 있어 회계연도 종료 임박 시점의 사후적 과목 조정 패턴이 관찰됨. 전용 제도가 집행 과정의 불가피한 변동에 대응하는 것이라면 그 시점이 특정 시기에 편중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연말 집중 현상은 집행 과정에서 인지된 과목 오류가 적시에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3. 개선 및 권고사항

- 전용 제도 자체는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나, 법령 미검토나 과목 오류에서 비롯된 전용이 반복될 경우 사실상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취지를 형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사전 관리가 요구된다.
- 기획예산담당관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 통계목 적정성과 관련 법령 적합성을 사전 확인하는 내부 검토 절차를 강화하고, 특히 민간보조·위탁·시설비 등 혼용 빈도가 높은 과목에 대한 편성 기준을 명확히 정비할 것을 권고한다.
- 반복 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실적을 예산 산정 근거로 명시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9. 예비비지출 집행잔액 과다

1. 현 황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설치하며,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있다.
- 2025 회계연도 태안군의 예비비 예산액은 4,099백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078백만 원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1백만 원이다.
- 일반회계 예비비는 재난지원금 사업 외 16건 3,491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177백만 원을 지출하고 13백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01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다.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21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출 결정하지 않아 지출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2025년 예비비 사용내역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4,077	3,491	3,177	13	301
일반예비비	477	371	349	13	8
재해·재난	3,120	3,120	2,827		293
내부유보금	480				

2. 문 제 점

- 2025 회계연도 태안군의 목적예비비(재해·재난)는 31억원을 편성해 28억원을 지출하고 3억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다. 집행잔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일반예비비에서 문화예술과는 꽃지해수욕장 할미할아비바위 붕괴에 따라 긴급 안전조치 예비비 5백 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월시켰는데 이 예산이 긴급 안정 조치에 적정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 환경산림과는 백화산 전망 교량 설치사업 공사대금 소송 패소에 따라 배상금 224백 만원을 지출하였다. 공사 마무리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예비비를 편성해서 2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집행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크다. 공직자들이 사업 수행에 있어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3. 개선 및 권고사항

- 예비비 집행잔액의 과다를 방지하려면 예비비 지출결정액 산정의 정확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재난·재해 예비비는 주로 긴급 응급복구비로 사용되므로 지출 결정을 신속히 하고 일반공사보다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지출을 신속히 해야한다. 가능한 한 예비비 지출 결정일자와 지출 일자 사이의 간극을 좁혀야 할 것이다.
- 예비비의 이월이나 집행잔액을 줄이려면 연말에 급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지 못할 바에는 다음 연도 본예산으로 편성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이월비 및 결산상 잉여금 관리 실효성 제고

1. 현 황

- 2025회계연도 태안군 결산상 잉여금은 153,968백만 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 중 이월비는 111,021백만 원임. 세부적으로는 명시이월비 39,321백만 원, 사고이월비 9,430백만 원, 계속이월비 62,269백만 원으로 구성되어 계속비 비중이 가장 높으나, 명시이월비가 사고이월비 대비 4배 이상 과다 발생하며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 이월비 발생의 주된 원인은 예산 편성 및 집행 단계에서의 사업 규모·비용 과대계상, 추진 지연 및 중단으로 인한 연내 집행 불능에 기인함. 또한 대규모 투자 사업을 관행적으로 분할 추진하거나 예산 편성 단계에서 무리하게 재원을 확보하는 경향이 반복되면서 이월비가 누적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는 것이다.
- 이월 및 집행을 추이를 분석하면 최근 5년 평균 이월률이 13.6%로 상당히 높고, 특히 2024년에는 15.0%까지 상승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 2025년 예산집행률은 84.4%로 전국 평균 수준이나, 5억 원 이상 이월 사업 60건 및 지출잔액 5억 원 이상 사업 80건 등 대규모 사업 중심의 집행 부진이 두드러진다.

최근 5년간 태안군의 세입세출결산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5년평균 증가율
세입(A)		760,598	885,874	971,646	934,780	965,331	6.1
세출(B)		650,079	719,992	774,310	753,993	811,362	5.7
결산상잉 여금	소 계	110,519	165,882	197,336	180,787	153,968	8.6

(A-B)	이월금	66,716	121,537	131,247	140,879	111,021	13.6
	보조금실 제반납금	8,530	10,138	8,331	9,304	9,342	5
	지방재원 잉여금	-	-	-	-	-	-
	순세계 잉여금	35,273	34,207	57,758	30,604	33,430	-1.3

2025연도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비교

(단위:백만원)

구 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 월 액	111,020	39,321	9,430	62,269
비 율(%)	100	35.5	8.5	56

2. 문 제 점

- 명시이월 제도의 취지 왜곡 및 비효율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는 제도의 본래 목적과 달리 실제 운영에서는 사업 미집행이나 단순 예산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는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 가능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 재정 운용의 경직성 및 건전성 악화 문제는 과도한 이월비 발생에서 비롯되며, 특히 명시이월 비중이 높을수록 의회의 심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이월 누적은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 대외 평가 및 인센티브 확보의 불이익 측면에서, 높은 이월률은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항목 및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되어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 확보에 실질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 투명성 결여 및 관리 체계의 한계를 살펴보면, 현재 명시이월은 단순 사유 중심으로만 기재되어 구체적인 사업 및 비용 항목 파악이 어려움. 또한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사후 점검 체계가 미흡하여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한다.

3. 개선 및 권고사항

- 적정 예산 편성 및 원인 분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현실적 집행 가능성을 엄격히 고려하여 적정 규모를 편성해야 한다.
- 특히 집행 가능성이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무리한 예산 확보 관행을 원천적으로 지양하고, 집행을 70% 미만인 주요 사업은 원인 분석을 의무화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회계 정보의 투명성 제고 및 행정 절차 준수를 위해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 사유와 범위, 금액을 명확히 하고 결산서 제출 및 시정요구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 단순 사유 기재를 넘어 사업별 세부 내역과 향후 집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고 군민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

- 제도적 심의 기능 강화 및 관리책임제 도입을 통해 이월사업의 적정성을 사전에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월사업 관리책임관제를 운영하여 사업별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분기별 집행계획 관리카드 작성 및 정기 실태점검을 통해 문제 사업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디지털 기반 실적 공개 및 성과 환류 체계 구축을 목표로 이월 추진 실적을 월 단위로 군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집행을 부진 부서에 대해서는 부서 평가 시 감점 등 실효성 있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장기 지연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무분별한 공모사업 참여 지양을 통해 사업 부진 사례를 근본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 담당자 역량 강화 및 의회 통제 실질화를 통해 이월 관리 전반에 대한 제도적 통제력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재원 운용의 적정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동시에 제고해야 한다.

11. 성인지예산비율 저조

1. 현 황

○ 성인지 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하여 예산이 성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 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하고 성인지 예산 비율은 전체 세입예산액에서 성인지 예산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2. 문 제 점

〈타지자체와의 비교〉

(단위:백만원, %)

자치단체	성인지예산액(a)	세입예산액(b)	성인지예산비율(a)/(b)*100
충남 본청	602,561	11,767,100	5.12
충남 천안시	75,051	2,588,676	2.9
충남 공주시	59,988	1,135,120	5.28
충남 보령시	58,521	979,585	5.97
충남 아산시	48,328	1,916,310	2.52
충남 서산시	49,533	1,382,087	3.58
충남 논산시	65,580	1,187,237	5.52
충남 계룡시	15,169	346,471	4.38
충남 당진시	70,391	1,335,588	5.27
충남 금산군	6,338	865,200	0.73
충남 부여군	75,327	822,014	9.16
충남 서천군	26,275	746,022	3.52
충남 청양군	29,952	622,939	4.81
충남 홍성군	26,750	906,380	2.95
충남 예산군	35,049	891,170	3.93
충남 태안군	5,925	734,139	0.81
평균	78,171	1,764,127	4.15%

- 충남권역 타 시도와의 비교분석 결과 태안군의 성인지 예산액은 25년 기준 0.81%로 전체 평균 4.15%에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3. 개선 및 권고사항

- 성인지예산은 성평등 실현을 통해 자원의 공정하고 균형 있는 분배에 기여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며 정부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권고한다.

12. 성인지 결산서의 실질화 방안 마련 필요

1. 현 황

-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는 총 18개 사업, 예산현액 5,547,888천 원에 대해 4,878,405천원을 집행하여 전체 집행률 87.93%를 달성하였음. 사업 유형별 구성은 아래와 같다.

성인지 사업 유형별 집행 현황

사업 유형	사업 수	예산현액(천원)	지출액(천원)	집행률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5	367,176	367,176	100.00%
성별영향평가사업	13	5,180,712	4,511,229	87.08%
자치단체특화사업	0	0	0	—
합계	18	5,547,888	4,878,405	87.93%

- 성과목표 달성 현황은 총 18개 지표 중 9개 달성, 9개 미달성으로 목표 달성률이 50.00%에 그쳤음. 기능별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전체 예산의 44.64%(2,476,663천원)로 최대 비중을 차지하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집행률 0%로 예산 전액(584,268천원)이 이월 처리되었음. 조직별로는 산업건설국의 집행률이 79.57%로 본청 내에서 가장 저조하였다.

- 부서별·사업별 집행 현황 및 성과 지표 달성 여부는 다음과 같다.

부서별·사업별 집행 및 성과 달성 현황

부서	사업명	예산현액 (천원)	지출액 (천원)	집행률	성과목표(지표)	목표 치	실적 치	달성 여부
기획예산담당관	청년네트워크 운영	7,476	4,341	58.06 %	수혜 여성 비율 증가	47%	45%	미달 성
전략사업담당관	AI융합산업진흥원 조성	320,000	320,000	100.00 %	서비스 수혜 대상자	200 명	3,200 명	달성
행정지원과	인사행정 운영	465,834	458,358	98.40 %	성인지 감수성 강화	50명	불특 정	미달 성
행정지원과	공무원 교육 훈련	597,800	587,196	98.23 %	성인지 감수성 강화	70명	불특 정	미달 성

부서	사업명	예산현액 (천원)	지출액 (천원)	집행률	성과목표(지표)	목표 치	실적 치	달성 여부
안전관리과	안전취약계층 교육 지원	30,673	30,673	100.00 %	참여인원 수	900 명	900 명	달성
경제진흥과	은퇴 신중년 재취 업 교육	43,000	24,312	56.54 %	교육 지원	50명	93명	달성
교육체육과	평생학습관 운영	193,180	191,391	99.07 %	남성 수강인원 비율	28%	17.10 %	미달 성
복지증진과	고독사 AI안부살 핍	5,354	4,717	88.10 %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94명	88명	미달 성
가족정책과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151,322	151,322	100.00 %	상담소 상담건수	700 건	881 건	달성
가족정책과	전 군민 양성평등 교육	5,701	5,701	100.00 %	양성평등 교육 대상자	2,30 0명	1,856 명	미달 성
가족정책과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39,480	39,480	100.00 %	지원대상자 수	210 명	230 명	달성
가족정책과	아이키움터 운영	526,921	526,921	100.00 %	이용자 수	22,0 00명	28,39 0명	달성
신속허가과	청년 이사비 지원	5,000	5,000	100.00 %	남녀 지원현황	40명	23명	미달 성
농정과	여성농업인센터 운 영	140,000	140,000	100.00 %	여성농업인 수	6,40 0명	6,400 명	달성
농정과	청년농업인 사회적 농업 지원	8,000	8,000	100.00 %	참여지원 예산	0천 원	8,000 천원	달성
먹거리유통 과	로컬푸드 운영	2,328,663	2,286,504	98.19 %	남성 근로자 비율	50%	33.33 %	미달 성
도시교통과	원북면 공영주차장 조성	584,268	0	0.00%	CCTV 설치율	100 %	0%	미달 성
보건의료원	방문보건사업 운영	95,216	94,489	99.24 %	순회 경로당 수	60개 소	60개 소	달성

○ 주요 사업의 성별 수혜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 성격에 따른
성별 편중이 사업 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주요 사업별 수혜자 성별 분포 현황(2025년 기준)

사업명	수혜자 계(명)	여성(명/비율)	남성(명/비율)	비고
아이키움터 운영	28,390	25,550 (90.00%)	2,840 (10.00%)	3년 연속 동일 비율
평생학습관 운영	1,386	1,149 (82.90%)	237 (17.10%)	전년(여 95.93%) 대비 개선
은퇴 신중년 재취업 교육	93	65 (69.89%)	28 (30.11%)	전년(여 23.53%) 역전
성폭력상담소 운영	881	610 (69.24%)	271 (30.76%)	전년(여 93.66%) 대비 남성 급증
고독사 AI안부살핌	88	56 (63.64%)	32 (36.36%)	전년 대비 여성 비율 증가
로컬푸드 운영	36	24 (66.67%)	12 (33.33%)	3년 연속 동일 비율
청년 이사비 지원	23	7 (30.43%)	16 (69.57%)	남성 전입 우위
방문보건사업 운영	2,963	799 (26.97%)	2,164 (73.03%)	전년(여 68.01%) 대비 급격 역전
청년농업인 사회적 농업	3	0 (0.00%)	3 (100.00%)	여성 수혜 전무
안전취약계층 교육	900	450 (50.00%)	450 (50.00%)	균등 배분

2. 문 제 점

- 성인지 결산 자체평가의 핵심은 성별 영향 분석에 기반한 원인 진단과 개선 방향 제시에 있으나, 18개 사업 중 향후 개선사항이 공란이거나 “해당없음”으로 처리된 사업이 10개에 달하고, 결과 원인 분석도 “불특정다수“, “공개 모집에 따름“, “목표 실적 달성“ 등 단편적 서술로 일관하는 경우가 반복되어 자체평가의 형식화가 두드러짐. 자체평가가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질적 목적 이행이 아닌 제도적 요건 충족을 위한 행정적 절차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됨. 이러한 양상은 확인되는 바와 같이 특정 부서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에 걸쳐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된다.

자체평가 충실도 현황

구분	해당 사업 수	해당 사업명
향후 개선사항 공란 또는 "해당없음"	10개	청년네트워크, AI융합산업진흥원, 인사행정운영, 공무원 교육훈련, 안전취약계층교육, 고독사AI안부살핌, 청년이 사비, 청년농업인사회적농업, 로컬푸드운영, 방문보건사업
결과 원인 분석 부실(단편 서술)	8개	인사행정운영, 공무원교육훈련, AI융합산업진흥원, 안전취약계층교육, 아이키움터운영, 청년농업인사회적농업, 여성농업인센터, 방문보건사업
성과 지표 실적치 미기재 또는 불명확	3개	인사행정운영, 공무원교육훈련, 평생학습관운영

- 인사행정 운영(예산현액 465,834천원), 공무원 교육 훈련(597,800천원) 등 두 사업은 합산 예산이 1,063,634천원에 달함에도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 성별 현황 전체를 “불특정다수”로 처리하여 성별 데이터 수집 체계가 부재한 상태이다. 신규임용 공무원이나 위원회 참석자, 기간제 근로자 등은 인사기록을 통해 성별 파악이 행정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집단임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성인지결산의 취지와 명백히 배치된다. 성별 데이터 없이 편성된 성인지예산은 결산 단계에서도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구조적 공백을 만들어내며, 이는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한다.
- 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성과목표 설정의 비합리성이 복수 사업에서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목표 설정 단계의 타당성 검토가 부실하였음을 나타낸다. AI융합산업진흥원 조성 사업의 목표-실적 16배 괴리와 청년농업인 사회적농업 지원 사업의 “0천원” 목표 설정은 성인지 관점의 목표 설정 검토가 편성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로컬푸드·평생학습관의 경우 현실 달성이 어려운 성별 균형 목표를 제시하면서도 그 달성 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는 모순이 반복된다.

성과목표 설정 적절성 의심 사업

사업명	목표치	실적치	피리율	문제 유형
AI융합산업진흥원 조성	200명	3,200명	1500%	목표 과소 설정
청년농업인 사회적농업	0천원	8,000천원	—	목표 자체 무의미
원북면 공영주차장 조성	100%(CCTV)	0%	-100%p	사업 미착수 편성
로컬푸드 운영	50%(남성비율)	33.33%	-16.67%p	달성 방안 없는 목표
평생학습관 운영	28%(남성비율)	17.10%	-10.9%p	달성 방안 없는 목표
청년 이사비 지원	40명	23명	-42.50%	목표 과대 설정

○ 성별 수혜 편중이 심각한 사업들에서 그 원인을 사업 구조나 운영 방식의 문제로 분석하지 않고 홍보 강화라는 단편적 대응만을 반복하여 성별 편중이 구조적으로 방치되고 있다. 아이키움터(여성 90%, 3년 연속 정체), 로컬푸드(여성 66.67%, 3년 연속 정체), 청년농업인 사회적농업(여성 0%, 2년 연속 정체) 등에서 편중이 고착화되어 있으며, 이를 단순 홍보로 해소하려는 접근은 이용 행태, 프로그램 구성, 운영 시간, 직종 고정관념 등 구조적 요인을 도외시한 것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성별 수혜 편중 지속 사업 추이

사업명	2023년 여성 비율	2024년 여성 비율	2025년 여성 비율	추세	자체 개선사항
아이키움터 운영	90.00%	90.00%	90.00%	정체	홍보 강화
로컬푸드 운영	66.67%	67.57%	66.67%	정체	공란
평생학습관 운영	73.15%	95.93%	82.90%	개선 중	공란
청년농업인 사회적농업	—	0.00%	0.00%	정체	해당없음
방문보건사업	71.41%	68.01%	26.97%	급격 역전	홍보·독려

○ 보건의료원 방문보건사업의 경우 결과 원인란에 “여성이 더 많고 증가 추세임”이라고 서술하였으나 실제 수혜자 데이터는 2025년

여성 26.97%, 남성 73.03%으로 전년도 여성 68.01%에서 완전히 역전된 상황이어서, 결산서 작성의 정확성에 심각한 문제가 확인된다. 이는 서술 내용이 실제 집계 결과와 정반대인 명백한 오기로, 자체 평가가 데이터 확인 없이 관행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결산서 전체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방문보건사업 수혜자 성별 추이 및 원인 서술 오류

연도	수혜자 계	여성(비율)	남성(비율)	결산서 원인 서술
2023년	4,187명	2,990명 (71.41%)	1,197명 (28.59%)	—
2024년	3,904명	2,655명 (68.01%)	1,249명 (31.99%)	—
2025년	2,963명	799명 (26.97%)	2,164명 (73.03%)	"여성이 더 많고 증가 추세" (오기)

- 성인지 예산 전체 집행률 87.93% 달성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현저히 저조한 사업에서 원인 분석 또한 부실하여 집행률 저조 사업에 대한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특히 도시교통과 원북면 공영주차장 조성은 집행률 0%로 예산 584,268천원 전액이 이월된 사업임에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유지된 것은 사업 편성 단계의 착수 가능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집행률 저조 사업 현황

사업명	부서	예산현액(천원)	지출액(천원)	집행률	결과 원인 기재 여부
원북면 공영주차장 조성	도시교통과	584,268	0	0.00%	기재(토지보상 지연)
청년네트워크 운영	기획예산담당관	7,476	4,341	58.06%	불충분(단편 기재)
은퇴 신중년 재취업 교육	경제진흥과	43,000	24,312	56.54%	일부 기재(직종별 편차)
고독사 AI안부살핌	복지증진과	5,354	4,717	88.10%	기재(사망으로 인한 이탈)

3. 개선 및 권고사항

- 향후 개선사항란을 공란 또는 “해당없음”으로 제출하는 행위는 성인지 결산의 제도적 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 기재를 의무화하고 담당 부서의 사전 검토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이와 병행하여 자체평가 실질화를 위한 작성 기준을 강화하고, 태안군 실정에 맞는 성인지 예산·결산 사례집 및 작성 지침서를 제작하여 공무원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 서식과 작성 예시를 포함해 배포할 것을 권고한다.
-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초기인 2014년에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본청과 충남 본청이 성인지 예산서 작성 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별도로 수행한 바 있으며, 2023년에는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성인지결산서 작성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침 정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다.
- 태안군의 경우 이러한 상위 기관의 매뉴얼을 기반으로 군 단위 사업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 자체 지침서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며, 현재 결산서 전반에서 확인되는 단편적 원인 서술, 성과 지표 실적 미기재, 서술-데이터 불일치 등의 오류는 상당 부분 작성 기준의 불명확성과 참고자료 부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뉴얼 정비가 선행될 경우 자체평가의 충실도는 단기간에 유의미하게 개선될 수 있다.
- 결산서 작성 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전문가 또는 총괄 부서가 사업별 특성에 맞는 작성 방향을 안내하는 사전 컨설팅 절차를 도입하고, 작성 완료 후에는 수치 정합성 검증, 서술 내용과 데이터의 일치 여부 확인, 성과 지표 적절성 평가 등을 포함하는 모니터링·환류 절차를 의무화하여 사후 피드백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

- 2020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성인지예산제 개선계획' 연구와 2024년 여성가족부의 '국가성인지 예결산서 종합분석 연구'는 공통적으로 결산서의 형식화 문제를 핵심 과제로 지목하면서 사전 교육과 사후 환류 체계의 부재를 반복 오류의 구조적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 방문보건사업의 수혜자 성별 데이터와 정반대되는 원인 서술, 인사 행정 운영·공무원 교육 훈련의 성별 데이터 전무 등 본 결산서에서 확인된 오류들도 사전 컨설팅과 사후 피드백 체계가 작동하였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안이었다.
- 매년 동일한 유형의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피드백 결과를 차기 연도 편성 및 작성에 환류하는 제도적 연결고리를 명확히 구축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 인사기록, 교육 수료 명단, 위원회 참석 대장 등 행정적으로 성별 파악이 가능한 모든 사업에서 성별 데이터 수집을 의무화하는 내부 지침을 정비할 것을 권고한다.
- 합산 예산 1,063,634천원 규모의 행정지원과 두 사업이 성별 데이터 전무 상태인 것은 성인지 예산 편성 타당성 심사 강화의 직접적 계기로 삼아야 하며, 데이터 수집 없이 편성된 성인지 예산은 결산 단계에서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구조적 공백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한다.
- 경상남도 교육청은 2021년부터 성과 서술과 수치를 결합한 방식으로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정성적 서술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성별 영향을 수치로 명확히 드러내는 방식을 정착시킨 바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태안군이 성별 데이터 수집 체계를 정비하고 결산서의 서술 방식을 개선하는 데 있어 직접적인 참고 모델로 활용할 수 있다.

- 성과 지표 설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년도 실적, 사업 추진 여건, 단계적 개선 계획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현실적 목표치를 설정할 것을 권고한다. AI융합산업진흥원 조성의 목표-실적 16배 괴리(200명 → 3,200명), 청년농업인 사회적농업 지원의 “0천원” 목표 설정, 로컬푸드·평생학습관의 달성 방안 없는 성별 균형 목표 등은 목표 설정 단계의 성인지 검토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명확히 보여주므로, 편성 심사 단계에서 성인지 전문가 검토를 제도화할 것을 권고한다.
- 홍보 강화에만 의존하는 단편적 대응에서 벗어나 성별 편중 해소를 위한 구조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아이키움터 운영은 아버지 대상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야간·주말 운영 확대, 로컬푸드 운영은 업무 영역 간 교차 배치 및 단계적 성별 채용 목표 설정, 평생학습관 운영은 남성 수요 기반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아이키움터(여성 90%, 3년 정채)·로컬푸드(여성 66.67%, 3년 정채)·청년농업인 사회적농업(여성 0%, 2년 정채) 등 성별 편중이 지속되는 사업에는 성별 참여 목표 비율을 성과 지표로 설정하여 책임성을 부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 현재 태안군 성인지 예산 사업이 돌봄·복지·여성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에서 벗어나, 대상 사업 선정의 전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이 필요하다.
- 성별 격차가 실질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교통·안전·도시계획 등 분야를 대상 사업에 적극 포함할 것을 권고하며, 원북면 공영주차장 조성이 성인지 예산에 편성된 것은 긍정적 시도로 평가되나 집행률 0%로 미착수된 채 결산된 것은 편성 단계의 타당성 검토 미흡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오히려 저해한 사례이다.

- 교통·안전·도시계획 분야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여성 안심 귀갓길, CCTV 사각지대 해소, 여성 친화 편의시설 확충 등 성별 수요가 구체적으로 반영된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착수 가능성을 확인한 후 편성하는 절차를 정립할 것을 권고한다.
- 이러한 분야 다변화와 전략적 사업 선정이 이루어질 때 태안군 성인지 결산서는 우수 운영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 성인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 착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저조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은 편성에서 제외하거나 규모를 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집행을 저조 사업에 대한 사전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 토지보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된 원북면 공영주차장 조성(집행률 0%, 584,268천원 전액 이월)은 타당성 검토 절차 강화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은 편성 규모가 아닌 집행의 질과 성과 분석의 충실도로 판단된다는 점을 제도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을 것을 권고한다.

13. 기금의 연금금 투자 검토

1. 현 황

○ 현재 태안군의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경영안정기금, 식품진흥기금, 자활기금, 주민자위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태안군정제기금, 태안군고향사랑기금, 영묘전주민지원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재정) 등 총 10개(통합재정안정화기금 2개 계정 포함 시 1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예치처는 영묘전주민지원기금을 제외한 전 기금이 지정 금고인 농협은행으로 되어 있다.

태안군 기금 연도별 조성액 현황 (단위:원)

기금명	예치처	2023년 말 예치액	2024년 말 예치액	2025년 말 예치액
재난관리기금	농협은행	1,614,858,000	1,848,557,000	1,770,151,192
경영안정기금	농협은행	200,000,000	200,005,000	104,700
식품진흥기금	농협은행	368,244,010	365,967,350	362,006,130
자활기금	농협은행	814,029,000	833,742,000	859,085,697
주민지원기금	농협은행	1,655,195,000	3,234,983,000	2,433,325,321
옥외광고발전기금	농협은행	149,091,000	134,331,000	404,449,910
태안군정제회기금	농협은행	2,663,596,000	2,222,212,000	889,823,901
태안군고향사랑기금	농협은행	166,302,000	437,060,000	810,686,150
영묘전주민지원기금	—	0	400,027,000	811,346,690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	농협은행	4,645,553,000	742,287,000	31,333,19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	농협은행	91,679,953,000	3,446,000	5,238,580
합계		103,956,821,010	10,422,617,350	8,377,551,461

- 2025년 말 기준 전체 기금 예치 잔액은 약 84억 원 수준으로, 재난 관리기금(약 17.7억), 주민자위기금(약 24.3억), 태안군정계기금(약 8.9억), 자활기금(약 8.6억) 등이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자금 대부분이 정기예금 등 예치금 형태로만 관리되고 있다.
- 2021년 1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6조 제2항 개정으로, 기금 관리 및 운용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기금 투자폴 등 외부 전문 투자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도 태안군을 포함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연기금 투자폴을 실제로 활용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2. 문 제 점

- 전문 운용기관에 의한 연기금 투자폴 참여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례 없음'을 사유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기금 여유자금을 저금리 예치금 상품에만 방치하고 있어, 시장 수익률에 기반한 자산 증식 기회를 지속적으로 상실하고 있다.
- 2023년 기준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이 18.8%에 달하였다는 점은 그 기회비용의 규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이를 단순한 관행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 운용 역량의 부재로 볼 수 있다.
- 행정안전부의 기금 성과 분석이 사업비 편성 및 집행률 등 지출 중심 지표에만 집중되어 있어, 기금의 조성 규모·운용 수익·투자 성과 등 핵심적인 재정 성과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 이는 기금의 본질적 목적인 자산 가치의 보전 및 증식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로서, 소극적 기금 운용으로 인한 손실이 결과적으로 군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질적·양적 축소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3. 개선 및 권고사항

- 전국적으로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태안군이 연기금 투자품을 즉시 도입하기에는 운용 전문 인력의 부족, 투자 실패에 따른 행정적 책임 부담, 내부 의사결정 체계의 미비 등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 다만 이러한 제약이 적극적 재정 운용을 영구히 유예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는 바, 기금별 유동성 요건 및 지출 주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초로 장기 여유자금의 범위를 우선 확정하고, 타 기관의 제도 도입 동향과 운용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연기금 투자품 위탁 운용 방안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
- 아울러 기금별 예치 규모, 운용 수익, 투자 성과를 군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행안부 평가 기준과 별도로 태안군 자체적인 수익률 기반 기금 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군민의 재원이 실질적인 재정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향후 보다 적극적인 자산 운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

14. 기금 사용액 및 실질 사업비 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

1. 현 황

- 2025회계연도 기준 태안군이 설치·관리하는 기금은 총 11종으로, 기금운용명세서상 대부분의 기금이 회계상 100%에 근접한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지출은 크게 기금 고유의 설치 목적에 따른 실질 사업비와 잔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수익을 얻는 예치금(재무활동 지출)으로 구분된다.
- 회계상 집행률은 이 두 항목을 합산한 수치인바, 예치금 비중이 높을수록 명목 집행률과 실질 사업 집행률 간의 괴리가 확대되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
- 기금별 명목 집행률과 실질 사업비 집행률의 비교는 아래와 같다.

기금별 실질 집행률 비교

기금명	운용가능액 (원)	총 지출액(원)	명목 집행률	실질 사업비(원)	예치금(원)	실질 집행률	괴리
재난관리기금	2,571,356,412	2,406,884,412	93.60%	636,733,220	1,770,151,192	24.8%	-68.8%p
경영안정기금	200,204,420	200,204,420	100.00%	104,700	200,099,720	0.05%	-99.95%p
식품진흥기금	383,636,130	383,636,130	100.00%	21,630,000	362,006,130	5.6%	-94.4%p
자활기금	868,085,697	868,085,697	100.00%	9,000,000	859,085,697	1.0%	-99.0%p
주민지원기금	4,557,803,471	4,557,803,471	100.00%	2,124,478,150	2,433,325,321	46.6%	-53.4%p
옥외광고발전기금	418,683,660	418,683,660	100.00%	14,233,750	404,449,910	3.4%	-96.6%p
태안군정제회기금	3,525,807,861	3,525,807,861	100.00%	2,635,983,960	889,823,901	74.8%	-25.2%p
태안군고향사랑기금	811,974,250	811,974,250	100.00%	1,288,100	810,686,150	0.2%	-99.8%p
영묘전주민지원기금	811,346,690	811,346,690	100.00%	0	811,346,690	0%	-100.0%p

기금명	운용가능액 (원)	총 지출액(원)	명목 집행률	실질 사업비(원)	예치금(원)	실질 집행률	과리
통합재정안정 화기금(통합)*	6,167,323,190	6,167,323,190	100.00%	31,333,190	6,135,990,000	0.5%	-
통합재정안정 화기금(재정)*	11,424,928,580	11,424,928,580	100.00%	5,238,580	11,419,690,000	0.05%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자금 융통 및 재정안정화가 설치 목적으로, 예치·예탁 중심 운용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므로 과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2. 문 제 점

- 예치금 비율이 높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기금 운용의 문제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일부 기금은 법령·조례에 따라 장기 안정적 적립을 전제로 특정 시점 이후의 대규모 사업이나 위기 대응에 대비하기 위해 재원을 비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 그러나 행정안전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 감사·권고 기관의 일반적 기준에 따르면, 사업비 편성 비율이 10% 미만이거나 집행률이 50% 미만인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기금, 설치 목적이 모호하거나 다른 재정 수단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한데도 적립만 반복되는 기금은 재정 비효율 및 기회비용 초래의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 이러한 기준과 2024·2025 회계연도 추세를 함께 적용하여 기금별 운용 현황을 검토하면 아래와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 영묘전주민지원기금의 경우 운용 가능액 811,346,690원 전액이 예치금으로 처리되어 공설영묘전 주변 마을 주민 지원이라는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집행이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전무하다.
- 2024년 설치 직후 사업 계획 수립과 기금의 활용을 위해서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차년도에는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자활기금은 실질 사업비가 9,000,000원(실질 집행률 1.0%)에 불과하고 98% 이상이 예치 처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2024년(1.1%)과 사실상 동일한 수준으로 2년 연속 반복되고 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자활 지원이라는 복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실질 집행 부진이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 태안군고향사랑기금은 운용 가능액 811,974,250원 중 실질 사업비가 1,288,100원(0.2%)에 그쳐 2024년 명목 사용률 9.4% 대비 사실상 집행이 전무한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자의 자발적 기여로 조성되는 재원인 만큼, 중기 기금운용계획과 연계된 사업 발굴 계획의 수립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 경영안정기금은 2024년 사용액 전무에서 2025년 명목 집행률 100%로 급반전하였으나 소상공인 지원 실질 사업비는 104,700원에 불과하고 기금 잔액이 사실상 소멸되었다. 연도 간 집행 패턴의 극단적 편차는 중장기 운용 계획의 부재를 시사하며, 차년도 지원 수요에 대응할 재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기금 운용의 연속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신규 조성으로 기금 규모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되었음에도 실질 사업비가 14,233,750원(3.4%)에 그쳐 재원 확충과 사업 집행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 태안군정제회기금은 실질 집행률 74.8%로 목적기금 중 사업 집행이 가장 활발하나, 이로 인해 기금 잔액이 2024년말 2,222,211,991원에서 2025년말 889,823,901원으로 60% 감소하고 있어 재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 2024년 결산에서도 대부분의 기금이 회계상 100%에 근접한 집행률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예치금 처리에 의한 외형적 수치에 해당하며, 2025년에도 동일한 경향이 반복되고 있다.
- 2023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를 권고한 바 있는 등, 기금의 예치 편중 운용 문제는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안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개선 및 권고사항

- 기금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회계상 집행률 외에 예치금 등 재무활동 지출을 제외한 실질 사업비 집행률을 별도 지표로 설정하고 성과보고서에 함께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 이를 통해 기금 운용의 실질적 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실질 집행률이 낮은 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기금의 법적 목적, 중기 기금운용계획상 목표 잔액 및 집행 경로, 사업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준치·통폐합·목적 조정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고한다.
-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의회 보고를 통한 검토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태안군의 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하길 바란다.

15. 미운영 특별회계의 정리 필요

1. 현 황

- 태안군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이원지구간척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의료급여기금운영, 주민소득지원사업, 수산자원조성,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6개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각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및 개별 설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설치는 해당 사업의 목적·재원 구분 및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
- 한편, 태안군에는 「태안여객 자동차 터미널 사업 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2020. 12. 15. 일부개정)가 현행 자치법규로 존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동 조례에 근거한 태안여객 자동차 터미널 특별회계가 설치·운영되고 있지 않다.
- 태안군의 결산서 및 공개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목록에서도 동 특별회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 태안군 도시교통과의 예산 자료를 확인한 결과, 태안여객 자동차 터미널 관련 사업은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편성·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태안군 기타특별회계 설치·운영 현황

회계명	근거 조례	최종 개정일	실제 운영 여부
이원지구간척사업	태안군 이원지구 간척농지기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2018. 8. 29.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태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2010. 1. 12.	○
의료급여기금운영	태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8. 12. 31.	○
주민소득지원사업	태안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2023. 11. 9.	○
수산자원조성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023. 12. 12.	○
학교급식지원센터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24. 5. 31.	○
태안여객자동차터미널	태안여객 자동차터미널 사업 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2020. 12. 15.	×

2. 문 제 점

- 태안여객 자동차 터미널 특별회계는 유효한 설치 근거 조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특별회계 목록에서 누락되어 있으며, 관련 사업은 도시교통과 일반회계에서 집행되고 있다.
- 이는 해당 사업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실제 재정 운영이 조례상 규정된 특별회계 방식과 달리 일반회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조례와 실제 재정 운영 간 불일치가 나타난다.
- 다만, 장기간에 걸쳐 특별회계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일반회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이 운영되어 온 사실은, 특별회계 설치 당시의 목적이 사실상 달성되었거나 별도의 회계 구분 필요성이 소멸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 이 경우 특별회계는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다한 상태임에도 근거 조례만 현행 유효 상태로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조례가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에 해당하며 자치법규 정비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3. 개선 및 권고사항

- 태안여객 자동차 터미널 관련 사업이 장기간 일반회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온 현실을 고려할 때,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은 사실상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행 「태안여객 자동차 터미널 사업 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하여 자치법규 체계의 정합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문화된 조례의 잔존은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법적 해석상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
- 아울러 이번 사례를 계기로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실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특별회계 관련 조례에 대한 정기적인 존속 필요성 검토 체계를 마련하고, 사업 방식 변경 또는 종료 시 관련 조례가 적시에 정비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제도화할 것을 권고한다.

16. 태안여객 퇴직급여충당금 과소 적립

1. 현 황

- 태안여객은 매년 운영적자가 발생하여 보조금을 지불하여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
- (단위:천원)

구분	2023	2024	2025
영업손실보상금	1,696,549	2,023,903	2,025,479
보 조 금	4,422,900	4,497,656	5,802,627
합 계	6,119,449	6,521,559	7,828,106

2. 문 제 점

- 태안여객의 직원에 대한 퇴직금적립금 (DB형)이 과소 적립되어 있어 퇴직금 자금에 대한 추가 적립이 시급하나 매년 적립부족액이 발생 하였으며 2025년말 현재 불입되어 있어야 할 퇴직연금 금액은 4,236,761천원이나 실제로는 3,640,836천원이 적립되어 595,925천원이 과 소 불입된 상태이다.
- 퇴직급여 및 퇴직금적립금 현황

(단위:천원)

내 역	2022	2023	2024	2025
퇴직연금운용자산(a)	2,403,583	2,538,465	2,797,171	3,640,836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액(b)	3,737,919	3,902,212	3,979,268	4,236,761
연금누계액 적립부족액(a-b)	(-)1,334,336	(-)1,363,747	(-)1,182,097	(-)595,925

3. 개선 및 권고사항

- 근로기준법 제 12조에 의거 퇴직금 등은 우선 변제토록 규정하고 있어 퇴직연금이 과소 적립된 경우 일시에 예상치 못한 퇴직금 지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운영비 지출시 우선적으로 퇴직금 충당금에 맞춰 퇴직적립금을 적립하기를 권고한다.

17. 상·하수도 특별회계 적자 운영 및 회계관리 개선 필요

1. 현 황

- 태안군 상·하수도 사업은 별도의 특별회계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나, 매년 상당한 규모의 구조적 적자가 발생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 아울러 회계 운영 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 발생 및 자금 이체 오류 등 관리상 문제도 병존하고 있어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 상수도 특별회계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2025회계연도 매출액은 10,433백만원인 반면 매출원가는 17,662백만원으로 영업손실이 8,635백만원에 달한다. 다만 감가상각비(8,898백만원)를 제외한 영업손익은 263백만원으로 현금 기준 수지는 소폭 흑자 수준이다. 타 지역 평균 대비 매출원가(17,662 vs 13,363백만원)가 현저히 높은 점이 수익성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된다.

(단위:백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재무제표 분석

구분	상수도			
	2023	2024	2025	타지역 평균 (2024)
자 산	167,592	166,169	161,213	108,188
부 채	501	456	241	608
매 출 액	9,135	9,576	10,433	9,354
매출원가	16,991	16,338	17,662	13,363
판매관리비	1,311	1,142	1,406	1,412
영업이익(손실)	(9,167)	(7,904)	(8,635)	(5,422)
감가상각비	8,292	8,589	8,898	4,696
감가상각비제외 영업이익(손실)	(875)	685	263	(726)

- 하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2025회계연도 매출액 1,807백만원 대비 매출원가 17,599백만원으로 영업손실이 16,173백만원에 달한다. 감가상각비 제외 기준으로도 손실이 9,885백만원으로, 현금 수지 자체가 구조적으로 악화되어 있다.

하수도 특별회계 재무제표

구분	하수도			
	2023	2024	2025	타지역 평균 (2024)
자 산	133,738	135,193	144,625	166,638
부 채	837,660	0	273	15,581
매 출 액	1,503	1,703	1,807	2,084
매출원가	14,909	16,752	17,599	19,062
판매관리비	364	364	381	385
영업이익(손실)	(13,770)	(15,413)	(16,173)	(17,363)
감가상각비	4,814	5,860	6,288	9,454
감가상각비제외 영업이익(손실)	(8,956)	(9,553)	(9,885)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의존 현황을 보면, 상수도 전입액은 2023년 4,760백만원, 2024년 4,508백만원, 2025년 2,059백만원이며, 하수도 전입액은 2023년 15,509백만원, 2024년 9,732백만원, 2025년 14,323백만원으로 연간 수백억원 규모의 일반회계 보전이 지속되고 있다.

상수도 타회계전입액 현황(특별회계)

출연기관	보조목적	특별회계 과목	2023	2024	2025
합계			4,760,315	4,507,568	2,059,294
일반회계(군)	공기업특별회계경 상전출금	타회계전입금수익	255,809	870,559	610,481
일반회계(군)	공기업특별회계자 본전출금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4,504,506	3,637,009	1,448,813
(단위:천원)					

하수도 타회계전입액 현황

(단위:천 원)

출연기관	보조목적	특별회계 과목	2023	2024	2025
합계			15,508,528	9,731,663	14,322,801
일반회계(군)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타회계전입금수익	9,569,545	1,456,899	6,753,848
일반회계(군)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5,938,983	8,274,764	7,568,953

- 구조적 적자의 고착화 문제가 가장 심각함. 상수도의 경우 매출원가가 매출액의 1.7배에 달하고, 하수도는 매출원가가 매출액의 약 9.7배에 달하는 극단적인 수익성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요금 수준이 원가를 크게 밑돌고 있음을 의미하며, 군민 생활 필수 서비스라는 공공성을 감안하더라도 요금현실화 없이는 구조적 적자 해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매년 수십억원의 손실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보전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군 전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 부(-)의 순세계잉여금 발생 문제도 확인됨. 2025회계연도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261,184,787원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당초 예상한 영업수익 대비 실제 수납액이 약 9억원 부족한 세입과 다 책정(-910,330,030원)과 사고이월 및 건설개량이월금 약 11.7억원 책정으로 인한 이월금 규모 예측 오류(+1,177,582,560원)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2025년분 발생원인 검토

구 분	금 액	상세내용
세입과다책정	(-)910,330,030	당초 영업수익으로 예상된 금액에 비해 실수납액이 9억원 가량 적게 수납됨
이월금 규모 예측 오류	(+)1,177,582,560	사고이월 및 건설개량이월금이 약11.7억원 책정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함
합 계	(-)261,184,787	

○ 아울러 상·하수도 회계 간 자금 이체 오류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부터 수령할 타회계건설보조금 49,033,000원이 하수도 특별회계로 잘못 이체되는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분리 운영 체계 하에서 이러한 이체 오류에 대한 파악 및 회계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회계 담당자의 시스템 숙련도 부족 및 내부 모니터링 기능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3. 개선 및 권고사항

- 요금현실화를 통한 구조적 적자 해소 방안 수립이 시급함. 상·하수도 사업은 군민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공공서비스임이 분명하나,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를 예산전입금으로만 보전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 원가 대비 요금 수준의 현실적 격차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단계적 요금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여 재정 부담을 점진적으로 완화하여야 한다.

- 비용 구조 측면에서는 매출원가가 타 지역 평균을 상회하는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불필요한 비용 발생 요인을 특정하고 운영 효율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의 노력이 요
금현실화와 병행될 필요가 있다.
- 특별회계의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 수립 단
계부터 집행 및 회계 결산에 이르는 전반적인 운영시스템 기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 세입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이월금 규모를 면밀히 산정하여 부
(-)의 순세계잉여금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역량을 강화하여
야 한다.
- 상·하수도 회계 간 이체 오류의 재발 방지를 위해 회계시스템 모
니터링을 강화하고 담당자에 대한 회계기준 교육을 정례화하여야
한다. 특히 타회계 전입금 처리 절차에 대한 내부 점검 체계를 마
련하고, 오류 발생 시 신속한 파악 및 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18. 성과목표 달성 현황 및 성과관리 체계 개선 필요

1. 현 황

-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수립 시 작성한 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한 성과 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서는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미흡 원인 등을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여 분석·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정 운영의 효율성·효과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 운영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 태안군은 2025회계연도에 전략목표 25개를 기반으로 정책사업목표 126개, 성과 지표 157개를 수립·운영함. 성과 지표 157개에 대한 달성도를 분석하면, 초과달성은 21개(13.4%), 달성은 99개(63.1%), 미달성은 37개(23.6%)이며, 초과 달성·달성을 합산한 목표 달성 비율은 76.4%이다.
- 직전 2개 연도와 비교하면, 2023회계 연도에는 성과 지표 181개 중 초과 달성 16개(8.8%), 달성 129개(71.3%), 미달성 36개(19.9%)이었으며, 2024회계연도에는 164개 중 초과달성 11개(6.7%), 달성 105개(64.0%), 미달성 48개(29.3%)로 달성 성과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다.

- 2025회계연도에는 초과달성 비중이 전년 대비 6.7%p 상승하고 미달성 비중이 5.7%p 감소하는 등 일정 부분 회복이 이루어졌으나, 합산 달성률 76.4%는 2021~2023회계연도 평균(약 80%)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아울러 성과 지표 수가 2023년 181개, 2024년 164개, 2025년 157개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연도별 태안군 성과목표 현황 >

회계연도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수	성과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2021	25	127	167	13 (7.8%)	122 (73.1%)	32 (19.2%)
2022	28	132	187	15 (8.0%)	133 (71.1%)	39 (20.9%)
2023	27	139	181	16 (8.8%)	129 (71.3%)	36 (19.9%)
2024	25	131	164	11 (6.7%)	105 (64.0%)	48 (29.3%)
2025	25	126	157	21 (13.4%)	99 (63.1%)	37 (23.6%)
비율은 각 연도 성과 지표 수 대비 백분율임.						

2. 문제점

- 성과 지표의 미달성 비율이 2021~2023회계연도 기간 중 연평균 약 20.0%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4회계연도에 29.3%로 급증하였으며, 2025회계연도에도 23.6%로 소폭 개선되는 데 그쳐 2개 연도 연속으로 역대 미달성률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 이는 개별 사업의 일시적 부진이 아닌 성과관리 체계 전반에 구조적 원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 아울러 성과 지표 수가 3개 연도에 걸쳐 181개→164개→157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바, 이러한 감소가 행정구조 변화나 사업합리화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미달성 지표를 축소·조정하는 방식의 성과관리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 성과 지표의 자의적 조정은 「지방자치단체 결산통합기준」이 요구하는 성실한 보고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다.
-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성과 지표 미달성이 복수 연도에 걸쳐 반복되는 양상이 확인되며, 이는 해당 부서의 목표 설정 수준의 적정성 또는 사업추진 역량에 대한 별도의 점검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체육과의 경우 2022회계연도 성과 지표 16개 중 9개(56.3%), 2023회계연도 15개 중 7개(46.7%), 2024회계연도 7개 중 3개(42.9%)가 미달성으로 분류되는 등 최근 3개 연도 연속으로 과반 수준에 육박하는 미달성 비율이 지속되고 있다.
- 보건의료원 역시 2021회계연도 13개 지표 중 5개(38.5%), 2023회계연도 15개 중 4개(26.7%), 2024회계연도 16개 중 4개(25.0%)가 미달성으로 나타나 매년 반복적인 미달성 구조가 확인된다.
- 기획예산담당관도 2022회계연도부터 2024회계연도까지 3개 연도 연속으로 10개 지표 중 3~4개가 미달성으로 분류된 바 있다. 이처럼 특정 부서에서의 반복적 미달성은 목표수준의 지속적 과다

설정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며, 동시에 성과평가의 환류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 해당 부서들에 대해서는 미달성의 구체적 원인—목표 적정성, 사업 추진 여건, 지표 설계의 타당성—을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3. 개선 및 권고사항

- 성과목표 수립 시 달성 가능성과 도전성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목표수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단순 목표 하향 조정 방식의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점검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미달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차기 성과계획에 반영하여 환류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권고한다.
- 성과 지표 수의 변경(신설·폐지·통합)에 대해서는 변경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문서화하여 결산보고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영의 성과중심적 접근이 형식이 아닌 실질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19. 개별 성과 지표의 수정 및 보완 필요

1. 현 황

- 2025회계연도 성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태안군은 총 13개 이상의 성과 지표에서 '예산집행률' 또는 '집행액/예산액'을 측정산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 경제진흥과의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의회사무과의 '의정 활동 지원 예산집행률'이 대표적 사례이며, 안전관리과의 재해위험 지구 정비, 신속허가과의 빈집정비·슬레이트 처리, 교육체육과의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 역시 단순 예산 집행률을 성과 달성의 척도로 삼고 있는 실정이다.

[표 56] 예산집행률을 측정산식으로 활용하는 부서와 정책사업 현황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 지표명	측정산식	'25 년 목표	'25 년 실적	달성 률
의회사무과	원활한 의정업무 추진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	의정활동지원 예산 집행률	단위사업별 집행률	85%	69%	76%
안전관리과	재난 초기 대응 강화로 재난 예방 및 피해 최소화	재해위험지구 정비율	집행액/예산액*100	100%	100%	100%
경제진흥과	전통시장,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예산 집행률	100%	83%	83%
미래에너지과	에너지 복지실현	중규모 LPG 배관망 보급사업 예산집행	예산 대비 집행 비율	90%	100%	100%
신속허가과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 업무처리 및 주거행정	빈집정비 실적	집행액/예산액	90%	94%	104%
신속허가과	위와 동일	슬레이트 처리사업 완료 실적	집행액/예산액	85%	79%	93%
신속허가과	위와 동일	주거급여 지원 실적	집행액/예산액	95%	95%	100%
신속허가과	위와 동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실적	집행액/예산액	50%	95%	190%
농정과	지역대표 농산물 육성 생산기반 조성	화훼종묘 입식비 집행률	화훼종묘입식비 집행액/예산액 * 100	100%	100%	100%
교육체육과	군민 체육진흥으로 자발적 체육활동 권장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	집행액/예산배정액*100	85%	99%	112%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 지표명	측정산식	'25 년 목표	'25 년 실적	달성 률
복지증진과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존중	보훈수당 집행률	집행액/예산액*100	86%	93.6%	109%
상하수도센터	맑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 및 하수 처리시설 개선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 확충	집행액/예산액*100	100%	100%	100%
환경관리센터	군민과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 기반 구축	주민지원기금사업 집행률	집행액/예산액*100%	80%	80%	100%

2. 문제점

- 예산 집행률은 사업에 투입된 자원의 소진 여부를 확인하는 투입 지표(Input Indicator)에 불과하여, 해당 정책이 군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개선하였는지, 정책 목표가 실질적으로 달성되었는지를 측정하는 결과(Outcome) 및 영향(Impact) 지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 단순히 예산을 모두 집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으로 간주되는 구조는 연말 몰아쓰기식 집행이나 비효율적 예산 운용을 구조적으로 조장할 우려가 있다.
- 실제로 의회사무과의 의정활동 지원 사업은 집행률이 69%에 그쳐 목표 대비 달성률이 76% 수준에 머물렀으며, 이는 정책의 실효성이 아닌 예산 집행 상황에 의해 성과 평가가 좌우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 반면 신속허가과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달성률이 190%에 육박하는 과도한 수치가 산출되었는데, 이는 집행을 중심 산식이 정책의 적정 규모 판단이나 실질적 주거 안정 효과 분석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표의 방향성이 정반대의 왜곡을 동시에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개선 및 권고사항

- 성과 지표 체계의 전면적 개편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집행률 편중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성과관리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는바,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인 전환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 우선적으로 집행률이 현저히 낮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높게 산출된 지표에 대해서는 집행 부진 또는 목표 설정 오류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차년도 예산 편성 및 지표 설정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표 57] 복지·민원 서비스 분야의 측정산식 개선 예시

$$\text{수혜율} = \frac{\text{실제 지원 인원}}{\text{지역 내 총 지원 대상 후보자 수}} \times 100$$

$$\text{처리 단축률} = \frac{\text{법정 처리 기간} - \text{실제 평균 처리 기간}}{\text{법정 처리 기간}} \times 100$$

- 나아가 사업의 성격에 따라 결과 중심 지표로의 점진적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복지·민원 서비스 부문에서는 실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중 혜택을 받은 비율을 측정하는 복지수혜율과, 법정 처리 기간 대비 실제 단축 정도를 측정하는 민원 처리 단축률을 도입하는 방향이 적절하다.
- 재난·인프라 조성 사업의 경우, 시설의 물리적 구축 현황보다는 실제 이용도와 위험 저감 효과를 직접 측정하는 지표로 전환함으로써 투자 대비 실질적 기여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그 산식은 아래와 같다.

[표 58] 재난·인프라 분야의 측정산식 개선 예시

$$\text{시설 이용률} = \frac{\text{연간 실제 이용객 수}}{\text{시설 수용 가능 인원}} \times 100$$

$$\text{피해 감소율} = \frac{\text{최근 3년 평균 피해액} - \text{당해 연도 피해액}}{\text{최근 3년 평균 피해액}} \times 100$$

- 이러한 결과 중심 지표로의 전환은 공무원이 단순한 예산 소진을 넘어 정책 목표의 완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행정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군민에게 돌아가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성과평가 관리 강화

1. 현 황

○ 지방보조금 법 제17조 1항에 따르면 지방 보조사업자는 ①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③ 회계 연도가 끝났을 때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금 법 제17조 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정산 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정산보고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정산보고서 제출 지연 및 미제출 사업 현황>

부서	보조사업명	보조사업기간	정산보고서 제출일
농업기술센터	벼 직파재배 확대 기술지원 사업	2025. 4. 30. ~ 5. 20.	2025. 11. 27.
농업기술센터	벼 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 시범	2025. 4. 30. ~ 6. 2.	2025. 12. 31.
가족정책과	경로행사	2025. 2. 12. ~ 5. 17.	2025. 11. 6.
건설과	남문3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2024. 7. 1.~2025. 1. 17.	2025. 7. 10.
건설과	삭선7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2025. 4. 1.~2025. 4. 25.	2025. 10. 22.
농정과	화훼인 한마음 단합대회	2025. 9. 5.	2026. 1. 16.
미래에너지과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2025.4.1. ~ 2025. 6. 30.	2026. 4. 17.
농정과	가축위생방역지원 (공동방제단 운영)	2025. 1. 1. ~ 12. 31	미정산 (정산보고서 미제출)
농정과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비용 지원	2025 1. 1 ~ 12. 31.	미정산 (정산보고서 미제출)
농정과	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	2025 1. 1 ~ 12. 31.	미정산 (정산보고서 미제출)
문화예술과	무형유산 공개행사 지원 (앉은곳-태안 설위설경)	2025. 4. ~ 12.	최종 미제출 (정산보고서 보완 중)

2. 문 제 점

- 실적 보고서의 기한 내 미제출은 법령 위반으로 지방보조금 제9조 4항에 따라 제출 지연 기간에 따라 제출 이후 최초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삭감할 수 있으나 태안군의 경우 실적 보고 지연에 대한 보조금 삭감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 기한 준수와 기한 미준수 시 법적 근거에 따라 예산 감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21. 국가등록문화유산 「태안읍 동문리 근대한옥」 보수정비 사업 설계비 반납에 따른 문화유산 보존관리 소홀

1. 현 황

- 태안군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인 「태안읍 동문리 근대한옥」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2023년도 보수정비 사업 설계비 1억원(국비50%, 도비50%)을 확보하였으나 해당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2024년 명시이월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025년도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였다.
- 이로 인해 설계비뿐만 아니라 근대 한옥 보수정비 사업비 11억8천만원(국비 5억 9천만원, 지방비 5억 9천만원)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고, 해당 사업은 향후 3년간 국비지원이 불가능한 제재를 받게 되었다.
- 그 결과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이 초래되었고, 특히 설계가 보수정비사업의 필수 선행 절차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문 제 점

- 문화유산 보존 관리 의무 소홀
 - 국가등록문화유산은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설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구조적 훼손 및 문화재 가치 저하의 우려가 발생하였다.

○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비효율성

- 태안 군수가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반납 처리하였다. 이는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사례로 판단된다.

○ 행정절차 미이행

- 사업 지연 또는 변경 상황에서 관련 검토 및 대체 계획 수립 없이 단순 반납 처리한 것은 적극 행정이 미흡한 사례로 확인되었다.

3. 개선 및 권고사항

○ 본 건은 단순한 예산 미집행을 넘어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기능을 사실상 방치한 사례로써 행정적 책임성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 보수정비 사업 조속 재추진

- 반납된 설계비에 대해 재예산 편성 또는 대체 자원 확보를 통해 실시설계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 문화유산 관리 실태 점검 및 긴급조치 시행

- 해당 근대 한옥의 안전 상태 및 훼손 여부를 정밀 점검하고, 필요 시 긴급 보수 등 임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 특히, 2019년 수립한 「태안읍 동문리 근대 한옥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보수 및 주변정비사업(전시, 체험, 야외공연, 관광 연계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해당 근대 한옥을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태안군은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이와 유사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정 책 제 안

1. 체납세금 콜센터 운영인력 확충 필요

1. 현 황

- 지방자치단체마다 체납 세금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체납 세금 징수는 인력과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징수담당 공무원들이 노력한 만큼 체납 세금은 해소되고 자주재원의 기틀을 다지게 된다.
- 태안군은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해 충청남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납세 지원 콜센터(이하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콜센터 직원들의 주요업무는 100만원 이하의 소액체납자에 대한 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개인별 분납 관리 서비스 제공, 체납 상담, 납세 편의시책에 대한 안내 등을 실시한다.
- 현재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 중 12개 시군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진시가 4명의 직원으로 가장 많고 태안군은 2명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콜센터 인원 및 인건비 현황

(단위:천원)

연 도	인원	콜센터 인건비			비 고
		계	군 비	보조금	
2025	3	124,610	79,882	44,728	
2024	2	121,881	78,018	43,863	

체납액 징수실적

(단위:천원)

연 도	이 월 체납액	징수액	100만원 이하 이월체납액	
			징수액	콜센터 징수액
2025	4,108	1,789	881	521
2024	4,100	1,784	1,160	623

2. 문 제 점

- 태안군 콜센터는 2025년 한 해 이월채납액 4,108백만원 중 소액 채납금 5,276건 521백 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문제는 콜센터 도입 당시 전담인원이 3명이었으나 1인의 결원이 발생하자 충원을 하지 않았다. 이후 콜센터는 또 한 명이 세입팀으로 기동배치되어 그 업무를 기간제 직원으로 대체하였다.
- 지방세가 채납이 되는 것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담당 인력이 부족하고 과중한 업무 때문이다.
- 보통 징수팀은 정규직이 공매, 영치, 압류, 경매 등 법적 절차 업무를 담당하고 콜센터 직원은 전화 안내, 독려, 상담 등을 통해 소액 채납금을 징수한다,
- 채납이 발생하면 빠른 시일내에 납세자에게 채납사실을 고지하고 신속한 처분을 실시해야 하는데, 인원이 들쭉날쭉하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3. 개선 및 권고사항

- 1차적으로는 콜센터 직원을 당초 인원인 3명으로 환원을 시켜야 한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징수팀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일반 징수업무와 이월 채납액을 관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고액채납액이 늘어나고 미수액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 올해 정부와 지자체는 지방세입 채납 관리단을 운영할 계획인데, 태안군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납세 지원 콜센터의 명칭을 개정하여 소액 채납 관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 관리단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태안군은 신규 인력(기간제)을 신속히 충원하고, 2027년 계획된 현장조사인력 10명도 차질 없이 배치하여 채납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보건의료원에 안과(眼科) 설치 필요

1. 현 황

- 농어촌 지역은 의료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전문진료, 응급 서비스, 첨단의료기기 등이 부족하여 진료가능 범위와 수준이 제한적이다.
- 특히 의료접근성과 의료의 질이 낮은 데다가 의료환경이 취약하여 삶의 질이 도시권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
- 이러다 보니 보통 태안에서 1차 진료를 받다가 대부분이 수도권의 상급기관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는 실정이다.
- 따라서 일상적인 치료만이라도 태안에서 불편하지 않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령 안과, 비뇨기과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환자들이 의료수혜에 소외되지 않도록 공공분야에서 진료과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의료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2. 문 제 점

- 최근 서울행 아침 버스(06:30, 07:30)이용자가 급증하여 사전 예매를 하지 않으면 버스를 탈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버스 이용자의 80~90%가 수도권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 1차 진료기관인 태안에서 몇 번 진료를 받다가 낫지 않거나 해당 분야 진료 병원이 없으면, 어쩔수 없이 서울이나 수도권의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것이다.
-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진료비가 태안보다 최소 4~5배 비싸고, 교통비, 식대 등 부대경비를 포함하면 하루에 소비하는 돈이 적게는 10여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이 들어간다.
- 게다가 진료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가 나오고 치료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태안에 안과(眼科)병원이 단 한 곳인데, 이 안과는 독점적 영업을 하고 있다.
- 안과를 이용하는 환자는 대개가 60대 이상의 고령층으로 나이가 들면 필연적으로 노안이 오고 백내장 등 안과 질환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단순 질병을 고치기 위해 안과가 문전성시를 이루다 보니 환자들은 대기 시간이 길어져 불가피하게 서산까지 가는 환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 더군다나 태안의 안과가 한 곳으로 유일하다 보니 과잉진료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고 치료가 잘되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3. 개선 및 권고사항

- 의료 인프라 부족과 사회적 요인에 의한 태안의 의료 취약점은 어쩔 수 없다. 그렇다면 이용 환자들이 많은 안과(眼科)문제만이라도 태안군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 병원이 경쟁력이 있어야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병원 이용의 주 고객층인 노인 어르신들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대안으로 태안군이 태안보건의료원에 안과를 개설할 것을 적극 제안한다. 의료원의 이용이 적은 진료과를 폐쇄하거나 군민들의 이용이 많은 진료 분야를 도입하면 태안군민들이 큰 수혜를 볼 것이다.
- 군민들 중에는 태안에 안과가 적어도 2개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참고로 서산시에는 안과 병의원이 5개소이다)
- 태안보건의료원에 안과가 개설되면 수익적 측면에서 손해가 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서비스가 개선되고, 서산시 소재 안과를 방문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새로 선출되는 군수는 의료 전반에 걸쳐 태안군의 의료체계를 진단하고,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필수 진료 분야를 적극 연구해 보기를 제안한다.

우 수 및 수 범 사 례

대한민국의 정원 태안! 2025 태안 방문의 해로 시작되다

- ❖ 태안군 해양치유센터 개관('25.),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최 ('26.)와 충남 방문의 해('25.~'26.) 연계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 추진배경

- 풍부한 자연 관광자원을 활용한 ‘꽃과 바다 태안’ 통합브랜드에 맞는 (꽃)원예+치유, (바다)해양+치유 등 치유 대표 관광도시로 도약

□ 비전 및 추진 전략

비 전	힐링의 삶을 선도하는 관광도시 태안	
슬 로 건/ BI		
목 표	자연과 치유의 관광도시 태안 브랜드 제고	
	연간 관광객 2,000만명 목표 (정량적 목표) (※'23년 관광객 1,733만명,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통계기준)	
추진전략	● 서해안 힐링관광 대표도시 도약 ● 누구나,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사계절 관광콘텐츠 발굴 ● 꽃과바다 힐링도시 브랜딩, 세대·지역별 타케팅 홍보 ● 방문객 친화형 관광 환경 조성	

□ 주요내용

- 태안 방문의 해 기본계획·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회 추진(3회)
- 태안 방문의 해 민·관 추진단 구성 및 실무자 회의 추진(1회)
- 관광 브랜드 구축

- 2025 태안 방문의 해 선포식, 방문의 해 슬로건 및 BI 개발

○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반려동물 동반 여행프로그램 연계 확대 운영
-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확대 운영(한달살이, 투어패스, 위케이션)
- 관광투어 프로그램 확대 운영(시티투어, 코레일 기차여행)
- 방문의해 기념 태안 해변길 스탬프투어 추진
- 방문의해 기념 KBS1 전국노래자랑 태안군편 추진
- 방문의해 기념 숲속 작은음악회 추진(4회)
- 태안 모래조각 힐링페스타, 솔향기길 축제 방문의 해 연계 운영
- 주요관광지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진이벤트 3회)
- 고아웃캠핑, 친환경캠핑 등 캠핑 행사 유치(3회)

○ 홍보 마케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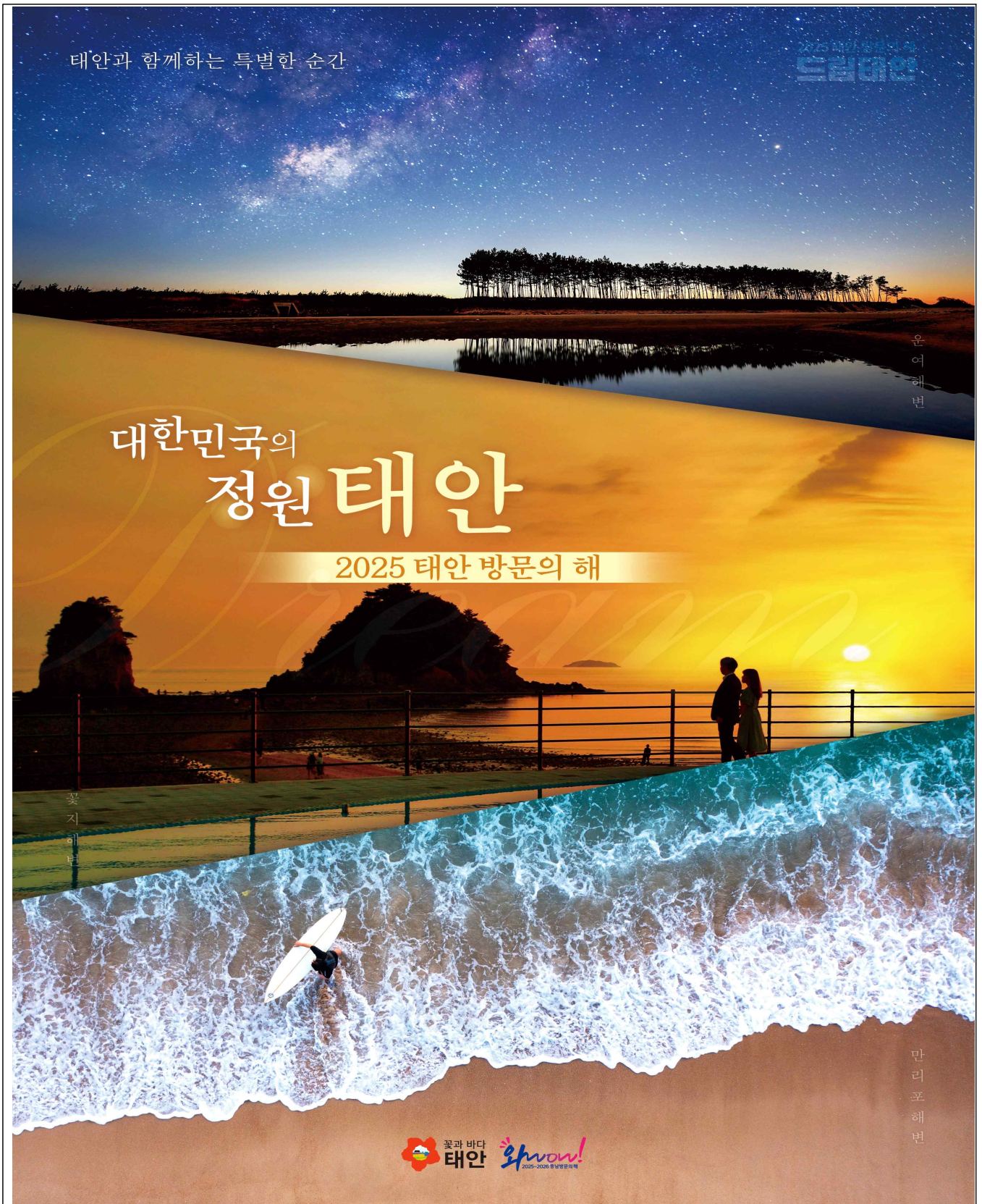
- 각종 축제·행사 시 태안 방문의 해 홍보 부스 운영(14회)
- 태안 방문의 해 홍보 영상 제작 및 배포
- 태안 방문의 해 집중 온오프라인 홍보(대도시 옥외광고, 관광 SNS 운영, 태안여행 및 주요관광지 숏폼영상 광고, 홍보탑·간판 설치 등)
- 태안 방문의 해 홍보 숏폼 영상 공모전 추진
- 유명 인플루언서 활용 관광지 홍보, 인스타그램(22명)
- 여행크리에이터 초청 팸투어 추진(20명)

□ 성과 및 기대효과

- 충청남도 관광분야(방문의 해 지원) 기관표창
- 2025년 한해동안 1,809만명이 방문하여, 태안 관광 활성화의 전환점을 마련
- 2026년에도 태안방문의 해 연장 운영으로 2,000만명 달성 목표 가시화

관련자료

대한민국의 정원 태안 2025 태안 방문의 해로 시작된다



서해안 유일 치유의 중심, 태안해양치유센터 개관!

❖ 웰니스 산업 수요 증가에 따른 해양자원을 활용한 치유공간 조성

□ 추진배경

- 해양치유 시범단지로 선정된 이래, 천혜의 해양자원을 가진 태안해양치유센터 조성으로 지역관광 산업과의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틀 마련

□ 사업개요

- 위 치 : 태안군 남면 달산포로 85-59 일원
- 사업기간 : 2022. 3. ~ 2025. 11.
- 사 업 비 : 399억원(국 147, 도 44, 군 208) * 건립 공사 304, 프로그램실 조성 95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2층(연면적 8,478㎡, 부지면적 37,993㎡)
- 주요시설 : 바데풀, 테라피실, 치유룸(15실), 식당, 카페 등

□ 추진경위

2017. 10.	▶ · 해양수산부 해양치유사업 시범단지 선정
2021. 8.	▶ · 환경부 국립공원계획 변경 고시
2021. 12.	▶ · 태안해안국립공원 공원사업시행 변경 허가
2022. 3. ~ 2024. 12.	▶ · 태안해양치유센터 건립공사 추진
2025. 2. ~ 7.	▶ · 태안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실 조성
2025. 11. 12.	▶ · 태안해양치유센터 개관식 및 축하공연

□ 성과 및 기대효과

- 관내 업소와의 협력을 통한 상생체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센터 내 인력채용 및 해양치유 신산업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관련자료

서해안 유일 치유의 중심, 태안해양치유센터 개관 !

태안해양치유센터 12일 개관...태안군, '치유-힐링' 중심도시 도약 기 대감!

최병민 기자 | 입력 2025.11.13 13:51 수정 2025.11.14 11:34 댓글 0



- 군민 등 1000여 명 축하 속 개관식... '치유문화 힐링도시'의 출발 공식 선포
- 남면 달산포 일원 8478㎡ 규모, 피부미용·근골격계 완화 특화형 센터로 조성
- 바데홀, 전신테라피실, 치유룸, 인피니티풀 등 우수한 시설 및 소프트웨어 관심



'대한민국 해양치유의 중심' 태안해양치유센터가 오랜 준비과정을 마치고 마침내 치유도시 태안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사진은 12일 충남 태안군 남면에서 진행된 태안해양치유센터 개관식 모습. /태안군

추천뉴스

임기 만료 7개월 앞둔 대전시 의원, 국외출장 부결



"내란 안 끝나" 다시 거리에선 박정현 군수...사법부 직격



'턱없이 적은' 대전시 비영리 단체 지원 예산 도마 위



박수현 "충청권, AI 출발선에 서 밀릴 수 없다"...예산 확보전



"외유성 그만" 인미동 유성구 의원의 셀프 해외연수



인기기사

주간 일간

- 1 한화이글스 대형FA 최악 부진, 2026시즌 ...
- 2 1조+α 프로젝트 '천안아산 돔구장' 놓고 ...
- 3 허태청 "유치 판결 이장우 시장, 변변함 만 ...
- 4 불꽃쇼 열리는 대전 엑스포로 30일 차량 ...
- 5 "이 다 뽑았는데 갑자기 폐업"...세종시 A ...

▶ 태안해양치유센터 개관 보도자료



▶ 태안해양치유센터 개관식 사진

-농작업 효율은 높이고, 농업인 부담은 줄여주고-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서비스 강화

- ❖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안전교육의 전 마을 확대로 농가의 적기 영농 지원 및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

□ 추진개요 및 주요내용

○ 농기계 전천후 종합교육장 조성·운영

- 추진실적 : 2025. 9. 5. 준공(1,380㎡), 현장활용기술교육 4개 과정 67명

○ 농번기 농기계 임대사업 휴일근무(토·공휴일) 실시

- 농번기(4~6월, 9~11월) 휴일 근무 추진 : 904건(11.27. 기준)

※ 임대실적 : 5,688건 7,045일 175,389천원(2025. 11. 27. 기준)

○ 찾아가는 농업기계 순회 안전교육 확대 운영

- 마을 단위 현장 순회교육으로 농업인 농기계 자가수리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강화

- 추진실적 : 159개 마을 2,451대 정비 기술교육 1,512명 안전교육

○ 적기 농작업 추진을 위한 농작업 지원 사업 추진

- 추진실적 : 농작업 대행(로타리) 283회 25.8ha, 운반서비스 106회

○ 주산지 일관 기계화를 위한 임대사업 기반 확충

- 추진실적 : 4개소 3종 6대 운영 ※ 2026년 2억원 확보

□ 성과 및 기대효과

-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 및 생산비 절감에 기여(절감률 16%~18%)

- 고가 농기계 구입 부담 완화 및 밭농업 기계화율 증대(50%→ 62%)

사계절 실습 가능한 농기계 전천후 종합교육장 완공 · 운영

- 연중 활용 가능한 농기계교육장 조성 완료
 - 2025. 9. 5. 개장식(1,380m²)
- 농업인 농기계 현장활용 기술교육 추진
 - 트랙터활용, 정비과정 등 4개 과정 66명



농업인 수요 맞춤형 농기계 임대사업 휴일 운영

- 임대수요가 많은 농번기 휴일에도 입·출고 가능하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소 4개소 운영
 - 전 직원, 2인 1조 : 연인원 468명 투입
 - 휴일 임대·활용 1,066건



찾아가는 농업기계 순회 안전교육 확대 운영

- 기존 1개조에서 2개조로 확대 운영으로 농업인들의 영농편의 증대와 만족도 향상
 - 159개 마을 2,451대 농기계 정비기술 교육
 - 농기계 안전사고예방 교육 강화 : 1,512명



농업현장 일손부족 해소지원

- 영세농업인, 여성농업인, 고령농가 등 취약계층의 적기 영농추진 지원
- 운반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운송지원
 - 농작업 대행 283회, 운반 서비스 106회



QR코드를 활용한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추진

- ❖ 다양한 취득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 복잡한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납세자 불편 해소하고자 QR코드를 활용한 신고·납부 지원

□ 추진배경



- 과세대상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각종 회원권 및 지목변경등
 - 취득원인 : 매매, 상속, 증여, 판결, 경락공매, 신(증)축, 합병, 부담부증여, 공유물분할, 대물변제등
- ⇒ 납세자가 신고대상 여부나 신고서 작성법 등을 몰라 가산세 부담 사례 발생

□ 추진계획

○ QR코드를 통한 상속 취득세 신고 안내

- 스마트폰으로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상속 취득세 신고서’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예시가 연결돼
전화·방문 없이도 쉽고 편리하게 서류 작성



○ 취득세 신고창구에 국민주택채권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QR코드 배치

-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채권금액을 사전에 확인

○ 카메라앱으로 스캔시 취득원인별 신고서(22종) 작성 예시 화면으로 연결되는 맞춤형 QR코드 제작 및 배포

⇒ 시범운영 후 납세자 피드백을 통한 업무 보완·발전

□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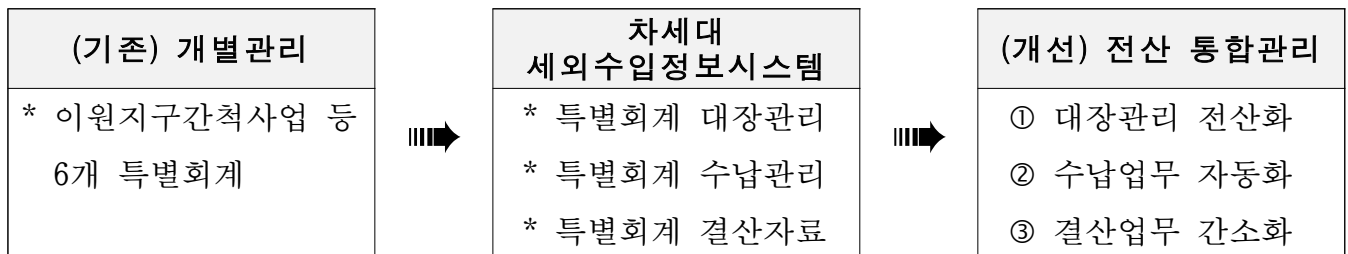
-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로 납세편의 제공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취득세 신고·납부 지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특별회계 세입관리

- ❖ 전산을 이용한 특별회계 통합 운영으로 세입관리 방식의 효율성 향상, 업무 체계화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5. 3. ~ 12.
- 대 상 : 특별회계(6개) ※ 공기업특별회계 제외
 - 이원지구간척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의료급여기금운영, 주민소득지원사업, 수산자원조성, 학교급식지원센터
- 운영현황
 - (기존) 특별회계 관리 프로그램 부재로 담당자별 수기 관리
 - (개선) 전산프로그램(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활용으로 체계적 자료 관리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고



□ 추진계획

-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내 특별회계사업 코드 정비 : '25. 3.
- 특별회계 담당자 권한 부여 및 세입관리방법 교육 : '25. 4.
- 특별회계별 세입계좌 등록 및 관리대장 입력 완료 : '25. 5.

□ 기대효과

- 담당자 업무 효율성 증대 및 투명성 제고
- 신속·정확한 세입처리 및 결산업무 추진 가능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알림 문자[SMS] 서비스

-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 문자로 영치사실 통보하여 운행자가 영치사실을 즉각 알 수 있도록 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및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 제고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연중(매주 2~3회 실시)
- 추진인원 : 3명(지방세징수팀장, 세외수입징수팀장, 영치담당자)
- 내 용 : 태안읍 내 단속차량 순회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 추진계획

- 번호판 영치 시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된 전화번호 등 파악하여 영치사실 알림 문자 즉시 통보
 - 장기 미운행 차량의 경우 영치사실 인지 못한 채 방치
 - 퇴근시간 이후 영치사실 인지시 차량운행 불가능한 상황 발생
- 파악된 연락처는 표준지방세시스템에 저장하여 체납독려에 활용

□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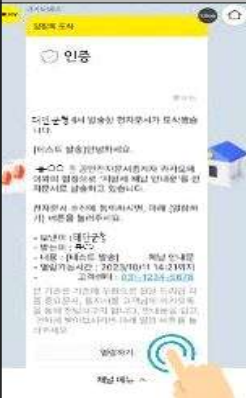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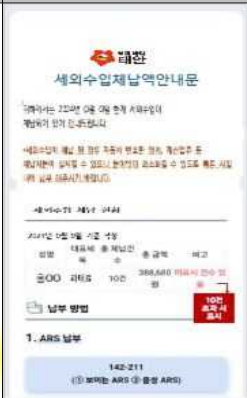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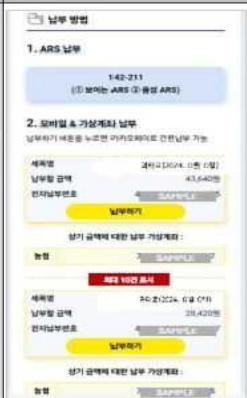
- 번호판 영치 후 즉시 문자 알림으로 체납액을 조기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빠른 차량운행 가능 및 징수 효율성 제고
 - 차량 운행전 영치사실을 알게되어 차량 사용에 불편함을 미연 방지
 - 관외 차량의 경우 영치사실 빨리 파악하여 일과시간 내에 납부 및 차량 이동 가능토록 민원인 편의 도모
- 장기간 미운행 차량의 경우 영치사실 조기 인지 및 민원 최소화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모바일 발송서비스 추진

- ❖ 「카카오 알림톡」 활용 체납 고지·납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업무 추진으로 징수율 제고 및 납세 편의 도모

□ 사업개요

- 대 상 : 세외수입 체납자
- 주요내용
 -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인 「카카오톡」 연계 모바일 전자송달
 - 세외수입 체납 안내 및 즉시 납부

고지서 도착	본인인증 (생체인증or비밀번호)	고지서 열람	원스톱 납부연결	납부하기
				
전자고지 알림톡 수신	본인인증	체납내역 확인	납부하기 버튼 탭	납부하기

□ 추진계획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 체결 및 연계정보(CI) 신규 가입 신청 : ' 25. 1.
-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계정보(CI) 변환 심사 신청 : ' 25. 2.
- 카카오톡 알림톡 체납·납부 서비스 개통 : ' 25. 3.

□ 기대효과

- 세외수입 고지서 송달률 증가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주소 불일치 등 우편 송달 불편 감소, 전자고지 본인만 확인 가능 등
- 다양한 납부안내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편의 도모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완벽 마무리

❖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및 복지 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 편의 증진

□ 사업개요

- 사업명 :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 위치 : 원북면 반계리 171번지 일원
- 사업량 : 대지면적 8,278㎡, 연면적 3,170㎡ / 지상3층
- 사업비 : 18,508백만원
- 사업기간 : 2020. 6. ~ 2025. 5.

□ 기대효과

- 행정복지센터 건립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 활용 가능하며, 마을간 어우러지는 통합의 장으로서 행정·복지·여가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다기능 복합청사 역할

